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15호 2019. 7. 1.(월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356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357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하동군 조례 제2358호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 하동군 조례 제2359호	하동군 관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 하동군 조례 제2360호	하동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43
○ 하동군 조례 제2361호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47
○ 하동군 조례 제2362호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01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62
○ 하동군 규칙 제1202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25
○ 하동군 규칙 제1203호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34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9-7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57
○ 하동군 고시 제2019-78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 고시(정인+).....	160
○ 하동군 고시 제2019-7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정영*).....	162
○ 하동군 고시 제2019-80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이강0)	163
○ 하동군 고시 제2019-81호	하천점용(사단법인 알프스하동 섬진강재첩축제위원장)	165
○ 하동군 고시 제2019-8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67
○ 하동군 고시 제2019-83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 고시(한국전력공사).....	170
○ 하동군 고시 제2019-84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안인*).....	172
○ 하동군 고시 제2019-87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주)지에스이)	173
○ 하동군 고시 제2019-88호	하동군 납세자권리현장 고시.....	174
○ 하동군 고시 제2019-90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176
○ 하동군 고시 제2019-91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최은*).....	184
○ 하동군 고시 제2019-92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변경) 고시((주)하동에너지).....	185
○ 하동군 고시 제2019-93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 고시((주)하동에너지).....	187

회 람									
--------	--	--	--	--	--	--	--	--	--

○ 하동군 고시 제2019-94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하동군수(건설교통과))	189
○ 하동군 고시 제2019-95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준공인가	190
○ 하동군 고시 제2019-9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91
○ 하동군 고시 제2019-98호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194
○ 하동군 고시 제2019-99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주)성현솔라팜)	195
○ 하동군 고시 제2019-100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196
○ 하동군 고시 제2019-101호	재해위험저수지	198
○ 하동군 고시 제2019-103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최향0)	199
○ 하동군 고시 제2019-104호	하동군 도로명 변경 및 부여 고시	200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19-628호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203
○ 하동군 공고 제2019-646호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9
○ 하동군 공고 제2019-647호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27
○ 하동군 공고 제2019-653호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34
○ 하동군 공고 제2019-655호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0
○ 하동군 공고 제2019-656호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4
○ 하동군 공고 제2019-667호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9
○ 하동군 공고 제2019-701호	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51
○ 하동군 공고 제2019-721호	하동군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63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9-581호	도로명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277
○ 하동군 공고 제2019-583호	환지계획 공고(공항지구 받기반정비사업)	281
○ 하동군 공고 제2019-610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수목보호 전문)채용시험계획 재공고	282
○ 하동군 공고 제2019-629호	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296
○ 하동군 공고 제2019-631호	(재)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선임직 이사 공개 모집	299
○ 하동군 공고 제2019-635호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공고(2차)	314
○ 하동군 공고 제2019-637호	재해위험저수지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감나무골 저수지 외 2개소)	325
○ 하동군 공고 제2019-625호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326
○ 하동군 공고 제2019-626호	과년도분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 공시	329
○ 하동군 공고 제2019-662호	2019년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2차) 용자계획 공고	330
○ 하동군 공고 제2019-665호	하동군 지방임기제공무원(7급상당)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344
○ 하동군 보건소 공고 제2019-7호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공고	346
○ 하동군 공고 제2019-692호	2020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 공고	352
○ 하동군 공고 제2019-711호	제4회 하동군 수목보호전문가 지방일반임기제(7급상당)공무원 최종 합격자 공고	356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공고 제2019-36호	20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 공고	357
○ 하동군 공고 제2019-715호	제5회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8급상당) 채용시험계획 공고	363
○ 하동군 공고 제2019-733호	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369
○ 하동군 공고 제2019-746호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79
○ 하동군 공고 제2019-756호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8급상당 야생차박물관 관리)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387
○ 하동군 공고 제2019-757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수목보호전문)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401
○ 하동군 공고 제2019-759호	하동군 도로명 변경 공고	415
○ 하동군 공고 제2019-760호	2019년도 하동군 전기자동차(초소형) 구매 보조사업 공고	416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56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하동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관, 직속기관의 직급 등) ①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 문화환경국 및 건설도시국을 둔다.

제4조(기획행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 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원과를 둔다.

② 기획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정책기획, 예산, 홍보, 청렴감사, 규제개혁, 대외협력 등 기획예산에 관한 사항
2. 행정, 혁신지원, 아동청소년, 인구정책, 평생학습, 정보화 등 행정에 관한 사항
3. 미래전략,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지역공동체, 신재생에너지 등 경제전략에 관한 사항
4. 복지기획,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정책,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지원 등 주민행복에 관한 사항
5. 세정, 경리, 세입관리, 부동산평가, 공유재산 등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종합민원, 토지정보,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등 민원에 관한 사항

제5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 ① 문화환경국에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특화산업과, 환경보호과, 수도사업과를 둔다.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관광기획,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슬로시티, 축제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 2.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진흥, 문화체육시설 등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 3. 녹차산업, 농업유산, 엑스포추진, 농촌융복합 등 특화산업에 관한 사항
- 4. 환경정책, 환경지도, 자원순환, 탄소제로, 환경시설 등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 5. 관리운영, 상수도, 하수도, 하수시설 등 수도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산단조성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건축민원, 건축행정, 복합민원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 2. 건설행정, 농업기반, 도로관리, 지역개발, 선진교통 등 건설교통에 관한 사항
- 3. 안전기획, 민방위안전, 방재, 하천관리, 통신관제 등 안전총괄에 관한 사항
- 4. 해양개발, 어업생산, 내수면개발, 섬진강관리 등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 5. 산림정책,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림휴양, 가로수관리 등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
- 6. 투자유치, 산단개발, 산단지원, 법률지원 등 산단조성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

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8조(보건소장 등)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0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농촌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1에 둔다.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농업지원, 축산경영, 가축위생, 농기계지원 등 농축산에 관한 사항
2. 수출지원, 유통마케팅, 농산물가공, 로컬푸드, 디자인 등 농산물유통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력, 농촌관광, 농촌자원, 귀농귀촌 등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식량특작, 원예과수, 드론활용 등 농업소득에 관한 사항

제4장 읍·면

제1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4조의2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하부행정기구) 읍·면에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행정기구인 부읍장·부면장을 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을 “기획행정국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행정국장”으로, “주무 국·과장”을 “직제 순으로 다른 국·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을 “국·과장급”으로 한다.

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을 “기획예산과장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관광진흥과장”으로, “기획담당주사”를 “축제담당주사”로 한다.

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 ⑪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 ⑫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 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 ⑭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 ⑮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 ⑯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 ⑰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 ⑱ 「하동군 포상 조례」 제9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 ⑲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 ⑳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 ㉑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제3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한다.
- ㉒ 「하동군 공인 조례」 제1조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제2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각각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한다.

㉓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제5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㉔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㉕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표 3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별표 5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별표 6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㉗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9조제2항제1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한다.

㉘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복구지원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복구지원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한다.

㉚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한다.

㉑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한다.

㉒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 중 “국장·담당관·과장실”을 “국·과장실”로 한다.

㉓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한다.

㉔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㉕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과장·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과·소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㉗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별 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하동군보건소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하동군 일원
화개보건지소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28	화개면 일원
악양보건지소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401	악양면 일원
적량보건지소	하동군 적량면 대티길 30-14	적량면 일원
횡천보건지소	하동군 횡천면 횡천강변길 35-3	횡천면 일원
고전보건지소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343-4	고전면 일원
금남보건지소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4	금남면 일원
금성보건지소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149	금성면 일원
진교보건지소	하동군 진교면 강변길 13-1	진교면 일원
양보보건지소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25	양보면 일원
북천보건지소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55	북천면 일원
청암보건지소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67	청암면 일원
옥종보건지소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28	옥종면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범왕보건진료소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8	범왕리 : 신흥, 범왕 대성리 : 단천, 의신 용강리 : 모암
부덕보건진료소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748-11	부춘리 : 신기, 부춘, 검두 덕은리 : 영당, 상덕, 중기
동매보건진료소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656	중대리 : 상중대, 하중대 동매리 : 동매, 평촌 매계리 : 매계, 노전 등촌리 : 덕기, 중기
삼화보건진료소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415	동 리 : 명천, 이정, 동촌 서 리 : 하서, 중서, 도장골, 동점
우계보건진료소	하동군 적량면 원우길 59-19	우계리 : 공월, 원우, 상우, 서당, 괴목, 신촌
남산보건진료소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965-3	남산리 : 원곡, 상남, 하남 학 리 : 개인, 마치, 구학
전대보건진료소	하동군 횡천면 전대1길 129-1	전대리 : 전대, 죽전 애치리 : 애치, 온동
성천보건진료소	하동군 고전면 지소1길 22	성천리 : 상성, 지소, 남성 범아리 : 울촌, 아정
고하보건진료소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79	고하리 : 흥평, 주성, 고하, 죽전 명교리 : 명교, 일기 성평리 : 신덕, 성평
중평보건진료소	하동군 금남면 상촌마을길 23	중평리 : 중평, 상촌 대치리 : 대치
덕천보건진료소	하동군 금남면 대왕골길 6	덕천리 : 상삼천, 하삼천, 덕포 대송리 : 대송, 사등, 환치 계천리 : 사궁, 영천, 계항 진정리 : 진정, 조금, 금오
갑정보건진료소	하동군 진교면 갑정길 7	월운리 : 월운, 갑정 관곡리 : 성평, 반석
우북보건진료소	하동군 양보면 서촌삼백이길 16	우북리 : 괴과, 하성, 서촌, 동촌 통정리 : 서제 감당리 : 상쌍, 신전, 영계
방화보건진료소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015-1	방화리 : 방화, 금촌, 가평 사평리 : 사평, 모성
화정보건진료소	하동군 북천면 화정길 22-1	화정리 : 화정, 상촌 서황리 : 중촌, 기봉
묵계보건진료소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196	묵계리 : 묵계, 학동, 원묵, 장고, 청학
위태보건진료소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096	궁항리 : 궁항, 오을 위태리 : 갈성, 위태 회신리 : 회신, 양지 월횡리 : 월횡, 고암
북방보건진료소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동학로 735	북방리 : 북방, 신촌, 불무 대곡리 : 추동, 한계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57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83명”을 “69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70명”을 “68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 센터			
총 계	699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68	-						
4급	4	4						
4급~5급	1			1				
5급	38	17	2	1	5		1	12
6급 이하 계	625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사	2							
지도직 계	25	-						
지도사	2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683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70명</u></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 <u>699명</u>----- -----.</p> <p>1. ----- <u>686명</u></p> <p>2.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58 호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읍 면 별	리 명 칭	구 역
하 동 읍	읍 내 리	읍 내 리 일원 [광평리 일부(294-7, 295-15 총 2필지)를 읍내리로 편입]
	광 평 리	광 평 리 일원
	비 파 리	비 파 리 일원
	신 기 리	신 기 리 일원
	목 도 리	목 도 리 일원
	흥 룡 리	흥 룡 리 일원
	화 심 리	화 심 리 일원
	두 곡 리	두 곡 리 일원
화 개 면	탑 리	탑 리 일원
	부 춘 리	부 춘 리 일원
	덕 은 리	덕 은 리 일원
	삼 신 리	삼 신 리 일원
	정 금 리	정 금 리 일원
	운 수 리	운 수 리 일원
	용 강 리	용 강 리 일원
	범 왕 리	범 왕 리 일원
	대 성 리	대 성 리 일원
악 양 면	미 점 리	미 점 리 일원
	축 지 리	축 지 리 일원
	신 성 리	신 성 리 일원
	신 대 리	신 대 리 일원
	신 흥 리	신 흥 리 일원
	중 대 리	중 대 리 일원
	동 매 리	동 매 리 일원
	등 촌 리	등 촌 리 일원
	매 계 리	매 계 리 일원
	정 동 리	정 동 리 일원
	정 서 리	정 서 리 일원
	봉 대 리	봉 대 리 일원
	입 석 리	입 석 리 일원
	평 사 리	평 사 리 일원

읍 면 별	리 명 칭	구 역
적 량 면	관 리	관 리 일원
	우 계 리	우 계 리 일원
	동 리	동 리 일원
	서 리	서 리 일원
	동 산 리	동 산 리 일원
	고 절 리	고 절 리 일원
횡 천 면	횡 천 리	횡 천 리 일원
	전 대 리	전 대 리 일원
	애 치 리	애 치 리 일원
	여 의 리	여 의 리 일원
	남 산 리	남 산 리 일원
	월 평 리	월 평 리 일원
	학 리	학 리 일원
고 전 면	범 아 리	범 아 리 일원
	성 천 리	성 천 리 일원
	신 월 리	신 월 리 일원
	전 도 리	전 도 리 일원
	대 덕 리	대 덕 리 일원
	고 하 리	고 하 리 일원
	성 평 리	성 평 리 일원
	명 교 리	명 교 리 일원
금 남 면	노 량 리	노 량 리 일원
	중 평 리	중 평 리 일원
	대 치 리	대 치 리 일원
	송 문 리	송 문 리 일원
	대 송 리	대 송 리 일원
	진 정 리	진 정 리 일원
	덕 천 리	덕 천 리 일원
	계 천 리	계 천 리 일원
	대 도 리	대 도 리 일원
금 성 면	가 덕 리	가 덕 리 일원
	궁 향 리	궁 향 리 일원
	고 포 리	고 포 리 일원
	갈 사 리	갈 사 리 일원

읍 면 별	리 명 칭	구 역
진 교 면	고 룡 리	고 룡 리 일원
	양 포 리	양 포 리 일원
	술 상 리	술 상 리 일원
	백 련 리	백 련 리 일원
	안 심 리	안 심 리 일원
	월 운 리	월 운 리 일원
	송 원 리	송 원 리 일원
	고 이 리	고 이 리 일원
	관 곡 리	관 곡 리 일원
	진 교 리	진 교 리 일원
양 보 면	운 암 리	운 암 리 일원
	장 암 리	장 암 리 일원
	감 당 리	감 당 리 일원
	우 복 리	우 복 리 일원
	통 정 리	통 정 리 일원
	박 달 리	박 달 리 일원
	지 례 리	지 례 리 일원
북 천 면	직 전 리	직 전 리 일원
	방 화 리	방 화 리 일원
	사 평 리	사 평 리 일원
	옥 정 리	옥 정 리 일원
	서 황 리	서 황 리 일원
	화 정 리	화 정 리 일원
청 암 면	평 촌 리	평 촌 리 일원
	명 호 리	명 호 리 일원
	중 이 리	중 이 리 일원
	상 이 리	상 이 리 일원
	묵 계 리	묵 계 리 일원

읍 면 별	리 명 칭	구 역
옥 중 면	청 용 리	청 용 리 일원
	월 횡 리	월 횡 리 일원
	두 양 리	두 양 리 일원
	종 화 리	종 화 리 일원
	문 암 리	문 암 리 일원
	안 계 리	안 계 리 일원
	병 천 리	병 천 리 일원
	법 대 리	법 대 리 일원
	대 곡 리	대 곡 리 일원
	북 방 리	북 방 리 일원
	정 수 리	정 수 리 일원
	양 구 리	양 구 리 일원
	궁 향 리	궁 향 리 일원
	위 태 리	위 태 리 일원
회 신 리	회 신 리 일원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59 호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체험관”을 각각 “기념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념관의 명칭은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이라 한다.

제3조제2항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체험관”을 각각 “기념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체험관”을 각각 “기념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체험관”을 각각 “기념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하동군 물품 관리조례」”를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체험관”을 각각 “기념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체험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이용구분	기준	이용시간		이용요금	비고
체험시설 (체험, 교육)	평일	전일	09:00~18:00	50,000원	
		오전	09:00~13:00	25,000원	
		오후	13:00~18:00	25,000원	
		야간	18:00~22:00	40,000원	
	토요일· 공휴일	전일	09:00~18:00	70,000원	
		오전	09:00~13:00	35,000원	
		오후	13:00~18:00	35,000원	
		야간	18:00~22:00	50,000원	

※ 이용시간의 일부만 이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우천 등으로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숙박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이용시간	일~목요일	금~토요일, 공휴일 앞날
숙 박	전통한옥 체험관	1박(1실 4명)	14:00 부터 ~ 다음날 10:00 까지	35,000	50,000

[별지 제1호 서식]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시설이용 승인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 또는 개인		연 락 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이용일시	년 월 일(: ~ :)			
이용목적 (행사명)				
참석예상인원	명 (남 : 명, 여: 명)			
비 고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 체험관 시설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시설이용 승인서

신 청 인	주 소			
	개인 또는 단체명		연 락 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이용일시	년 월 일(: ~ :)			
이용목적 (행사명)				
참석예상인원	명 (남 : 명, 여: 명)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체험관 시설 이용을 (신규,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시설이용 승인(취소·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개인 또는 단체명		연 락 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이용일시	년 월 일(: ~ :)			
이용목적 (행사명)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이용일시			
	기 타			
비 고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 체험관 시설 이용승인을(취소,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수탁신청서

- 1. 시설명 :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 2. 신청자 기재사항

단체명 또는 개인		단 체 구 분	
승인(등록)기관		승인(등록)일자	
승인(등록)번호		목 적 사 업	
대표자 성명		대표자 또는 개인 (생년월일)	(남/여)
대표자 또는 개인 주소			
단체 또는 개인 소재지			

3. 제출서류

- 가. 사업계획서
- 나.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이력서
- 다. 사업자등록증 1부.

4. 약정사항

- 가. 수탁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하여야 함.
- 나.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을 신청합니다.

위 단체 대표자 및 개인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수탁 결정 통지서

시설명 :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단체 또는 개인은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17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 군과 협약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7호 서식]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위탁 관리운영 협약서 안

(재산의 표시)

소재지 :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44-54

시설물 : 전시실 및 감상실, 교육관, 한옥체험관, 누각, 관리사무소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위 표시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운영을 위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하동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기간) 갑은 위 표시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을 을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준수사항) ① 을은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수탁권을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수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는 등 책임을 질 수 있다.

제3조(민·형사상 책임 등) ① 을은 시설물 관리 운영 시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피해 당사자 또는 갑에게 **보상책임을 질 수 있다.**
- ③ 을은 시설을 수탁 관리하면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제4조(특수조건) ① 본 위탁 재산 일부를 갑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하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 등을 관리 운영하되, 특히 주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역주민 또는 탐방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해지조건)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등 모든 시설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해지통보) 갑과 을이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상회복) 을이 사용한 시설물을 갑에게 반납할 때,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탁받은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운영 예정일) ① 관리운영 예정일은 년 월 일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을이 운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하동군 관련 조례 등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 없거나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협약서의 효력 등) ①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생하고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종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 동 군 수 (인)

을 (수탁자) :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u></p>	<p><u>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 출신의 동편제 명창 유성준·이선유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의 보존·계승발전 및 선양을 위하여 건립한 <u>하동군 판소리 체험관</u>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u>체험관</u>"이란 <u>하동군 판소리 체험관</u>의 전시실 및 감상실, 교육관, 한옥체험관, 누각, 관리사무소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p>	<p>1. "<u>기념관</u>"---- <u>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u> ----- -----.</p>
<p>2. (생 략)</p>	<p>2. (현행과 같음)</p>
<p>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u>체험관</u>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p>	<p>3. ----- <u>기념관</u> ----- -----.</p>
<p>4. "이용료"란 <u>체험관</u>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p>4. ----- <u>기념관</u> ----- -----.</p>
<p>제3조(명칭 및 위치) ① <u>체험관의 명칭은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이라 한</u></p>	<p>제3조(명칭 및 위치) ① <u>기념관의 명칭은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u></p>

다.

② 체험관의 위치는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44-54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체험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5. (생략)
- 6. 체험관의 운영관리 및 안전관
리에 관한 사무
- 7. 그 밖에 군수가 체험관의 건립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운영 및 위탁) ① 체험관
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관소리의 보존·계승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
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체험관
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
을 받아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
을 받아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
항에 대해서 자체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다
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기념관이라 한다.

② 기념관-----

-.

제4조(업무) 기념관-----
-----.

- 1. ~ 5. (현행과 같음)
- 6. 기념관

- 7. ----- 기념관

제5조(관리운영 및 위탁) ① 기념관-----
-----.
기념관-----

② ----- 기념관

----- 기념관 -----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

-----.

1. ~ 3. (생 략)

② (생 략)

제7조(이용시간) ① 체험관의 이용시
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체
험시설과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1. 2. (생 략)

② (생 략)

제8조(이용료) ① 체험관의 시설 중
전시실·감상실의 이용료는 무료
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과 숙박시
설의 이용료는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③ (생 략)

제11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
여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 략)

2. 체험관 내에서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생 략)

제12조(시설이용 승인) ① 체험관 시
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
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 승
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시실 및 감상실만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이용시간) ① 기념관-----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이용료) ① 기념관-----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의 제한) -----

----- 기념관-----
-----.

1. (현행과 같음)

2. 기념관

3.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설이용 승인) ① 기념관 -

-----.

아도 된다.

② · ③ (생 략)

제13조(이용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승
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체험관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변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
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체험관 내 시설물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하동군 물품 관리조
례」를 준용한다.

제15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생 략)

② 체험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신
청서와 관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연
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생 략)

제16조(위탁운영기간) ①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용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

-----.

1. · 2. (현행과 같음)

3. 기념관

제14조(변상책임) ① -----

----- 손해배상 책임
을 질 수 있다.

② 기념관 -----
-----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15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념관-----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위탁운영기간) ① (현행과 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사용료) ① 체험관의 위탁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한다.

② 협약에 따라 사용 수입액과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원가 산정 사용비용을 상계하여 위탁 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20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유성준·이선유 선생의 선양사업과 그 밖의 관소리 관련 사업 추진, 그 외 체험관 운영 등을 위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음)

②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

제18조(위탁사용료) ① 기념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② -----
기념관-----

-----.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20조(보조금 등 지원) ① -----

----- 기념관 -----

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② (생략)

③ 수탁자가 체험관 내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체험관 운영 관리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⑥ 체험관의 운영·관리 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⑦ 수탁자는 체험관의 내부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 ----- 「하동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기념관 -----

-----.

④ -----
----- 기념관 -----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념관-----

-----.

⑦ ----- 기념관-----

-----.

⑧ ----- 기념관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60 호

하동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2. 군수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 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제6조(지원금의 교부) ① 군수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재정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한다.

제7조(지원금의 정산)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기간 운항실적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 대상 항공사업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61 호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주민행복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군 의회 의원
2.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산부 및 영유아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 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 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 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기간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철도요금 또는 농어촌버스요금) 이하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철도요금 또는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 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하 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 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 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 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 4. 민간단체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경상남도지사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	--	--	--	--	--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장애(장애 급)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 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특이 사항	
-------	--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mm×297mm

[뒤쪽]

신청서 작성 안내

-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본인 확인 서류
 -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 나.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 약 서

본인은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62 호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경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75㎡당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의 경우에는 0.7대 이상)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60㎡당 1대
8.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9.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 1201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하동군 본청의 국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① 국장은 부군수를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본청

제3조(국장·과장)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획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기획예산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나. 행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다. 경제전략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라. 주민행복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마. 재정관리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바. 민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 문화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관광진흥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나. 문화체육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다. 특화산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라. 환경보호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마. 수도사업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도시건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나. 건설교통과장 : 지방시설사무관

다. 안전총괄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라. 해양수산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 마. 산림녹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 바. 산단조성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제4조(사무분장) 군 본청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제5조(소장·지소장·보건진료소장) ①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군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 의사 중에서 보한다.
- ③ 군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보건진료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사무분장) 군 보건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소장) 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를 두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농축산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 2. 농산물유통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 3. 농촌진흥과장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 4. 농업소득과장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제9조(사무분장) 군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장 읍·면

제10조(읍·면장 등) ①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② 부읍·면장은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하며 총무업무를 겸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하동군 자체감사 규칙」 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제5조제15호 중 “읍·면 또는 담당관·과”를 “읍·면 또는 과”로, 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행정지원국장·관광산업국장·기획예산담당관 및 전 과·소장”을 “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③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8조제1항 중 “담당관·과·소”를 “과·소”로, “관계된 담당관·과·소”를 “관계된 과·소”로, 제12조제1항 중 “담당관·과·소”를 “과·소”로, 제13조 중 “담당관·과·소”를 “과·소”로, 별지 제2호서식 중 “담당관·과·소장”을 “과·소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중 “담당관·과·소”를 “과·소”로 한다.

⑥ 「하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2조제2호 중 “국장·담당관·과장”을 “국·과장”으로, 제2조제5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3조제3항 중 “국·담당관 및 과·소”를 “국·과·소”로, 제7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 중 “담당관·과”를 “과”로, 제7조제3항 중 “소관 담당관·과장”을 “소관 과장”으로, 제8조제2항 중 “담당관·과 업무담당주사”를 “과 업무담당주사”로, 제10조제2항 중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본청, 국·담당관·과”를 “본청, 국·과”로, 별지 제4호서식 중 “소속 담당관·과·소”를 “소속 과·소”로, “국·담당관 및 과·소”를 “국·과·소”로, 별지 제13호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로, 별지 제15호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로, 별지 제16의2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별지 제16의3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별지 제17호서식 중 “담당관·과·소명”을 “과·소명”으로, 별지 제18호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별지 제18의2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별지 제20의2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별지 제20의4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별지 제23호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과·소별”로 한다.

⑦ 「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별표 1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운영 규칙」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 국장, 관광진흥국장, 행정과장, 관광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전 국 장, 주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행정국장”으로,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문화환경국장”으로, “관광 산업국장”을 각각 “건설도시국장”으로, 제2조제3호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⑩ 「하동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제1항제5호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별지 제4호서식 중 “담당관·과·소 근무책임 자”를 “과·소 근무책임자”로, “담당관·과·소명”을 “과·소명”으로 한다.

⑪ 「하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제2조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 장”을 “국·과·소장”으로, 제3조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 소장”으로, 제3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 로, 제3조제3항제2호 중 “국·담당관 및 과·소”를 “국·과·소”로, 제3조제3 항제9호 중 “국·담당관 및 과·소”를 “국·과·소”로, 제4조제2항 중 “국장·담 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 장”으로,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각각 “국·과·소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중 “국장·담 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 관과 주관 및 관련 부서의 국·과·소장”을 “주관 및 관련 부서의 국·과·소 장”으로, 제7조제2항 중 “담당관 및 과·소장”을 “과·소장”으로, 제8조제1 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8조제3호 중 “국장· 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

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2조제1항제2호 중 “담당관·과”를 각각 “과”로,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마목1)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마목2)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아목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차목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1호파목 중 “담당관·과”를 “과”로, 제3조제1항제1호하목 중 “담당관·과”를 “과”로, 제3조제1항제1호거목 중 “담당관·과”를 “과”로, 제3조제1항제3호라목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3조제1항제3호자목 중 “담당관·과”를 “과”로, 제8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9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0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0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1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3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3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4조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5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15조제3항 중 “담당관·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6조 중 “담당관·과

장”을 각각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 17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8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를 “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8조제3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9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9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9조제3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9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제 20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0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담당관·과”를 “과”로, 제20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21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21조제1항제2호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2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3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23조제4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25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5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26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를 “과”로, 제27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7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해당 담당관·과장”을 “해당 과장”으로, 제28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2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 29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

예산과장”으로, 제29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31조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47조제1항 중 “담당관·과”를 “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47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48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48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59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68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69조의2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69조의2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123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29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제136조 중 “주관담당관·과장”을 “주관 과장”으로, 별표 1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기획행정국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담당관·과”를 각각 “과”로, “담당관·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별지 제12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14호서식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별지 제15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16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19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별지 제19-1호서식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별지 제19-2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별지 제20호서식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별지 제51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89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98호서식 중 “담당관·과”를 “과”로, 별지 제101호서식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별지 제102호서식 중 “국 담당관·과”를 “국·과”로, 별지 제104호서식 중 “국 담당관·과”를 “국·과”로 한다.

- ⑯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중 “담당관·과 및 소속행정기관”를 “과 및 소속행정기관”으로 한다.
- ⑰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담당관 및 과·소장”을 “과·소장”으로, “담당관 및 과·소”을 “과·소장”으로, 제8조제4항 중 “주관 담당관·과장”을 “주관 과장”으로 한다.

[별표 1] 군 본청 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1.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

담당	분장 사무
정책 기획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통제
	2 과·소 업무의 기획 조정
	3 중장기 계획 및 조정
	4 군정업무 주요업무 확인평가
	5 군수공약 사항 및 지시사항 총괄관리
	6 군정혁신(정부혁신, 도정혁신) 업무 총괄
	7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상 시상
	8 정책실명제 계획수립 및 공표
	9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10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11 외국인 정책 및 통계, 등록
	12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
	13 군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14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총괄 기획·조정
	15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동향관리 및 개별법 관련 업무 추진
16 선벨트 남중권 프로젝트 기획 조정	

담당	분장 사무
예산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집행 결정
	4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설계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총괄추진
	5 전시 지방행정 동원계획 수립시행
	6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7 국고예산확보 및 보조금 관리 총괄
	8 지방기금 운영 총괄
9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상환업무 총괄	

담당	분장 사무	
홍보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1	홍보 계획 수립
	2	군정홍보 및 보도
	3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 및 편찬
	4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
	5	전시 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담당	분장 사무	
청렴 감사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
	2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
	3	공무원 비위 예방대책과 비위조사·처리
	4	주민 감사 청구제 운영
	5	군 대형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임명제도 운영
	6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7	계약심사

담당	분장 사무	
규제 개혁	법무·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	민사·국가·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2	자치법규(조례·규칙) 제·개정, 폐지 심사 및 관리
	3	행정규칙(훈령·예규) 제·개정, 폐지 심사 및 관리
	4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 및 관리
	5	법령 해석, 적용 및 자문 수행에 관한 사항

담당	분장 사무	
대외 협력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1	자매결연, 국·내외교류업무 총괄
	2	국제교류업무 계획 및 개발
	3	국제과건 연수공무원 관리 및 지원
	4	사회봉사단체 관리 총괄
	5	사회봉사단체 보조금 지급 및 관리
	6	자원봉사활동 개발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행정과장

담당	분장 사무	
행정	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교육
	2	호봉승급 및 호봉 재 확정
	3	공무원시험, 인사위원회 운영
	4	여론, 의전관리
	5	집단민원 총괄관리 및 행정구역 개편조정
	6	전시 주민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7	읍면 기능전환 계획수립 및 시행
	8	분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직제관리
	9	국가기반체계 보호
	10	전국 및 경남시장군수협의회 관련 업무
11	일제강점하 및 과거사 진상규명	

담당	분장 사무	
혁신 지원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	
	1	복무, 보안, 공인, 당직 관리
	2	사회적혁신(사회적혁신정책, 갈등, 청년) 업무 총괄
	3	공무국외여행 허가
	4	맞춤형복지제도, 동호회, 휴양시설 운영
	5	분권, 주민자치 업무
	6	4대보험, 공무원연금, 행정공제회, 직장금고 관리
	7	사무위임 및 전결규정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 및 임금협약 업무
9	우편물, 적십자회비, 국기계양 업무	

담당	분장 사무	
아동 청소년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1	청소년 육성계획 및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민간청소년 수련시설 허가, 등록 및 지도
	4	청소년 자립대책 및 모범청소년 발굴 포상
	5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6	청소년 보호법 관련 사무 추진
	7	요보호아동 후원자 결연사업 지도관리
	8	결식아동 보호지원
	9	가정위탁 보호사업 지원 및 관리
10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	

담당	분장 사무	
인구 정책	인구증대시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1	인구증가 종합추진계획 수립
	2	인구증가 시책추진
	3	출산장려시책 지원
	4	출산관련의료비 지원
5	저출산대책	

담당	분장 사무	
평생 학습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	범 군민 교육대책 운영
	2	초·중·고등 교육기관의 지원 활성화
	3	인재육성 장학재단
	4	특수대학(분교) 설립 육성
	5	교육환경 및 교육개발 기반개선
	6	평생학습관 설립 운영
7	학교 기숙사·학원 설립 지원	

담당	분장 사무	
정보화	행정전산화 및 정보화 관리에 관한 사항	
	1	ICT신기술(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사물인터넷 등) 활용
	2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
	3	군민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정보 활성화 대책 추진
	4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 운영
	5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주요서버 도입 및 운영
	6	새울행정시스템 구축 운영

경제전략과장

담당	분장 사무	
미래 전략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1	지역개발 공모사업 총괄추진
	2	국가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한방향노화 바이오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총괄
	5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평가
	6	지역발전 투자협약 사업 총괄
	7	남해안시대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
	8	행복생활권사업에 관한 사항
	9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총괄

담당	분장 사무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 지역경제발전, 전통시장육성에 관한 사항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대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관리에 관한 사항
	3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운영 및 관리
	4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7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
	8	물가관련 종합계획 수립·조정
	9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10	취업알선 및 일자리센터 운영
	1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2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공산품 품질관리
	14	상품권 발행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특수거래업 관리에 관한 사항	

담당	분장 사무	
기업 지원	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기업유치(경제자유구역 외의 사항)	
	1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2	기업활동 규제 완화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장설립 승인, 등록, 변경, 창업승인 및 사후관리
	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분장 사무	
지역 공동체	마을공동체 육성 및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기획조정
	2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
	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운영	

담당	분장 사무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에너지 수급 종합계획 수립
	2	도시가스 공급사업
	3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및 세부계획 수립
	4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술연구개발 및 사업화 계획 수립
	5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관련 업무
	6	광업 및 전기사업에 관한 사항
7	전원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행복과장

담당	분장 사무	
복지 기획	기초생활 보장지원 및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평가
	2	기초생활보장지원업무 계획 수립 추진
	3	생업·생활안정자금 용자 및 특별회계 관리
	4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관리 및 지원
	5	지역사업의 개발·관리 시행
	6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7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
	8	종합사회복지관 총괄 및 시설관리, 복지회관(목욕탕) 관리

담당	분장 사무	
장애인 복지	장애인복지, 자활 업무에 관한 사항	
	1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2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4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5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6	장애인바우처 지원 사업
	7	자활프로그램 및 자활후견기관 관리
	8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9	사랑나누미 빨래방 운영
10	알프스하동복지관 운영	

담당	분장 사무	
노인 복지	노인복지 대책수립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1	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2	노인소득보장 및 취업기회 확충
	3	묘지설치 허가 및 분묘의 개장신고
	4	사랑의 주택 관리 및 실버식당 운영
	5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경로당
	6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7	기초노령연금 지원 및 관리 운영
	8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9	알프스하동복지관 운영

담당	분장 사무	
여성 정책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1	여성정책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
	2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및 지원
	3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대회 관련사항
	4	여성폭력예방 및 방지사업 추진
	5	가정,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6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지원 및 관리
	7	가족지원 및 건강가정지원 업무
	8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
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담당	분장 사무	
통합 조사 관리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선정, 자격관리, 근로능력판정에 관한 사항 추진
	2	복지대상자 각 사업팀 보장 결정 요청
	3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4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관리 및 특별회계 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5	차상위 계층 및 사회취약 계층 지원 업무
6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	

담당	분장 사무	
희망 복지 지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
	2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관리
	3	공공·민간기관 서비스연계 체계구축
	4	방문형 서비스사업 협력체계 구축 운영
	5	129희망콜(보건복지)센터 업무
	6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관리
	7	불우이웃돕기(공동모금회 연계), 후원·결연 업무
	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재정관리과장

담당	분장 사무	
세정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	세정의 전문성, 효율성 대책 추진
	2	지방세 부과(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과세결정
	3	은닉세원 조사 및 발굴
	4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5	지방세 구제업무
	6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7	지방세 세무조사 및 기타 지방세 부과

담당	분장 사무	
경리	공사 및 물품계약,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1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2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3	공사 용역 계약 및 기타 계약관리
	4	공무원 급여 및 원천징수

담당	분장 사무	
세입 관리	세입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1	세외수입 총괄관리
	2	자금운용 및 자금배정
	3	국도비 보조금 관리
	4	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
	5	수입증지 관리
	6	세입 과오납금 환부처리
	7	기부금품 모집 및 심의처리
	8	세입징수보고 및 세입결산
	9	지방세 체납액 징수
	10	지방세 체납처분(압류, 공매의뢰 등)
	11	행정제재(관허사업 제한, 고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기타 행정제재)
	12	결손처분
13	법원 경매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담당	분장 사무	
부동산 평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관리,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	
	1	개별필지 특성조사, 지가 산정 및 검증 업무
	2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업무
	3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	개별주택 가격조사 계획수립
	5	표준주택 가격에 관한 업무
	6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건축물, 선박·항공기) 부과
	7	개발부담금 조사·산정 및 부과

담당	분장 사무	
공유 재산	국·공유재산 및 재물관리에 관한 사항	
	1	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재물조사 실시
	2	청사·관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지도
	3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업무지도 감독
	5	도·군유 일반재산 관리
	6	관용차량 관리
	7	물품출납, 보관 관리

민원과장

담당	분장 사무	
종합 민원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	민원안내 및 상담
	2	여권업무 및 민원행정시책 추진
	3	민원 서비스 혁신(민원24)운영
	4	민원(신고, 인·허가 등)접수 통제
	5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관리
	6	고객만족도설문조사
	7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인감업무
	8	기록관 운영
	9	행정정보공개 운영
	10	행정정보공동이용
11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 및 운영	

담당	분장 사무	
토지 정보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 관리 기획 및 조정
	2	지적 측량 검사
	3	KLIS 구축사업 기획·조정 업무
	4	도곽접합 등 도면 정비
	5	정밀한 연속도면 제작 추진
	6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권한부여 등 관리
	7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
	8	토지등록사항정정 관련 업무
	9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 공부정리
1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담당	분장 사무	
지적 재조사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
	2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3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지급·징수·공탁
	4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관리
	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
	6	지적공부세계측지계변환업무

담당	분장 사무	
공간 정보	공간정보,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1	공간정보에 관한 사무
	2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무
	3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4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5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무
	6	국가지점번호에 관한 사무
	7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8	부동산 실명법 운영
9	부동산 중개업 관리	

2. 문화환경국

관광진흥과장

담당	분장 사무
관광 기획	관광종합개발계획, 신규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2 관광 통계 업무 추진
	3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
	4 신규관광자원 개발
	5 유원시설업 및 야영업 등록관리
	6 캠핑장 등록 및 유지관리
	7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8 관광단지 트레킹·힐링공원 조성사업
	9 관광숙박업 등록·관리
	10 지리산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11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지원업무	

담당	분장 사무
관광 개발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권역별 관광기반 조성
	3 관광지 지정 및 개발
	4 역사이팅 레포츠 개발사업
	5 폐철도 관광자원개발사업
	6 청학동 관광지 개발사업
	7 남해안권 관광개발에 관한사항
	8 관광안내판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9 케이블카 조성사업
10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담당	분장 사무	
관광 마케팅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관광시설 마케팅에 관한 사항	
	1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2	관광시설 마케팅
	3	화개장터 운영 및 관리
	4	삼성궁, 천제당 운영 및 관리
	5	최참판댁 운영 및 관리
	6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유지관리
	7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유지관리

담당	분장 사무	
슬로 시티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1	슬로시티 업무 총괄 관리 및 추진
	2	관광 홍보 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관광 홍보(동영상) 업무 추진
	4	관광객 안내(팸투어) 및 인센티브 업무 추진
	5	관광 여행업 업무 추진
	6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관리
	7	하동군 홍보대사 관리 업무 추진
	8	공동브랜드 관리 업무 추진
	9	관광상품 개발
	10	관광불편 민원 처리 업무 추진
	11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획 총괄
12	국내·외 관광설명회, 업무협약 추진	

담당	분장 사무	
축제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	
	1	각종 축제관련 종합계획 추진 및 총괄지원
	2	화개장터 벚꽃축제 추진
	3	하동야생차문화 축제 추진
	4	알프스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추진
	5	어슬렁 캠핑 업무 추진
	6	회남재 숲길 걷기 업무 추진
	7	국제트레일 러닝 업무 추진
	8	축제 프로그램 신규 발굴

문화체육과장

담당	분장 사무	
문화 예술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지방문화예술 진흥
	2	문화예술분야 지도 육성 및 관리
	3	문화원 운영 지도 감독
	4	전시문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공도서관 지원 및 인쇄소·출판사 관리
	6	공연장 등록 관리
	7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 사업추진

담당	분장 사무	
문화재	문화재에 관한 사항	
	1	문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
	2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도
	3	국·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사업
	5	천연기념물(동물) 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
	6	가야사 복원 총괄

담당	분장 사무	
체육 진흥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	스포츠마케팅 사업
	2	각종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준비
	3	국제적인 대회유치 기반조성
	4	체육진흥업무 활성화 추진
	5	하동군체육회 업무 지원
	6	생활체육 업무추진 및 동호인 단체 육성 관리
	7	체육시설 등록 신고 및 지도 감독
	8	체육공원조성 및 공공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9	금남면소재지 축구장 조성사업 추진	

담당	분장 사무	
문화 체육 시설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문학관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3	지리산역사관 운영 및 관리
	4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 계획 수립
	5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발
	6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7	시설물 이용 홍보 및 수강인원 관리

특화산업과장

담당	분장 사무	
녹차 산업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	
	1	하동 녹차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2	녹차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
	3	가루녹차 생산 기술지도(차광재배)
	4	녹차연구소 지원 관리
	5	차 생산자단체 협의 관리
	6	야생녹차산업특구 지정 관리
	7	하동녹차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 관리 등록

담당	분장 사무	
농업 유산	농업유산 관리 및 소득화·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1	농업유산 발전 종합계획 수립
	2	하동녹차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 관리
	3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
	4	하동녹차 홍보 및 박람회 지원
	5	정금차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보전 관리
	6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운영
	7	차 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지원
8	농업유산 연계 관광상품·프로그램 개발	

담당	분장 사무	
엑스포 추진	엑스포 추진에 관한 사항	
	1	엑스포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	엑스포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엑스포 프로그램 개발
	4	엑스포기반시설 조성
5	엑스포 콘텐츠 발굴 및 홍보 마케팅 운영	

담당	분장 사무	
농촌 융복합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사항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2	향토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
	3	새로운 지역특화산업 개발 및 지원
	4	농산물융복합 기술개발사업
	5	벤처농업 육성

환경보호과장

담당	분장 사무	
환경 정책	수질오염총량제추진,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1	기후변화적응 대책 및 탄소포인트제 추진
	2	섬진강 낙동강(덕천강)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3	수변구역관리 및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4	수계기금관리
	5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6	황사피해·오존 예방대책 추진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8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 협의
	9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및 환경위원회 운영관리
	10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12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 전개
	13	토양, 실내공기질, 빛공해 관리
	14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 및 운영
	15	수질 및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16	어린이활동공간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17	녹색제품 구매촉진
18	환경단체 지원관리	

담당	분장 사무	
환경 지도	대기,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환경오염 단속에 관한 사항	
	1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2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공사,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및 지도점검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4	생활 소음, 진동, 악취 관리
	5	수질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및 예방관리
	6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 지원
	7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8	야생동식물 보호 및 구조
	9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
	10	환경신문고 운영관리
	11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피해예방사업 추진
	1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피해방지단운영, 수렵장 운영

담당	분장 사무	
자원 순환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1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3	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및 기금조성
	4	생활쓰레기 종량제 추진 및 수거대책 수립
	5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단속
	6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 및 다량배출업소 관리
	7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8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 추진 및 총괄관리
	9	농촌농업 폐비닐관리 및 공동집하장 설치
	10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11	1회용품, 과대포장상품 지도점검
	12	쓰레기 집하시설,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관리
	13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및 나눔장터 개최
	14	국토대청소 운동,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15	환경미화원 관리 총괄
	16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17	사업장, 건설, 의료, 지정폐기물 허가 및 지도점검
	18	폐기물처리신고 인허가 및 사업장 관리
19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및 위반사업장 단속	

담당	분장 사무	
탄소 제로	탄소 없는 마을 육성, 자연생태 보전에 관한 사항	
	1	탄소 없는 마을 조성
	2	공기캔 상품개발 및 판매활성화
	3	지리산생태과학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4	생태관광활성화 및 생태해설사 운영
	5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 추진
	6	녹색성장브랜드사업 추진
	7	생물다양성보전 및 두꺼비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사업 추진
	8	습지보호 및 인공습지 조성사업 추진
	9	지리산국제환경생태예술제 추진
10	특정도서 관리	

담당	분장 사무	
환경 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	생활폐기물처리장 운영
	2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3	재활용품 매각업체 선정 및 대금관리
	4	일반차량 반입 폐기물처리수수료 관리
	5	소각, 매립, 재활용선별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6	환경미화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수도사업과장

담당	분장 사무	
관리 운영	상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	상수도 운영 총괄 및 조직관리, 경영혁신·합리화에 관한 사항
	2	물관리 종합 대책 수립 및 시행
	3	취·정수장 운영 및 관리
	4	저수조 청소(업) 관리
	5	상수도 관리원 운영 및 상수도 사용량 검침
	6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요율조정
	7	상수도 주요정책 총괄 및 운영평가 등 관련 업무
	8	예산 편성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9	상수도 통계조사 및 상수도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담당	분장 사무	
상수도	상수도 설치에 관한 사항	
	1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타당성 검토
	2	상수도 송·배수 및 상수관로와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3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시행
	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5	소규모수도시설 사업시행 및 관리
	6	급수공사 승인
	7	노후 상수관로 정비
	8	누수탐사 및 누수사고 복구
	9	비상급수계획 수립 및 시행
10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및 관리	

담당	분장 사무	
하수도	하수도에 관한 사항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2	공공(일반, 소규모, 면단위)하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
	3	하수관로의 정비 및 설치사업
	4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5	하수처리구역 관리
	6	하수도 관련 조례 제·개정
	7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
	8	분뇨 등 관련영업 인·허가 및 관리
	9	하수도 통계 작성 및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10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관리
	11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
12	하수도대장(관망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담당	분장 사무	
하수 시설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	공공(일반, 소규모, 면단위)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장 운영관리
	2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개선사업
	3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4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기술진단, 약취진단 및 개선사업
	5	하수도 준설사업
	6	침사물(협잡물) 및 공공하수도 슬러지 위탁처리에 관한 영역
	7	소규모 마을하수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8	공공하수도 통합관리센터 운영 관리
	9	공공하수도 민간위탁(관리대행)사무 운영 관리
	10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 분석
11	하수도 관리원 관리	

3. 건설도시국

도시건축과장

담당	분장 사무	
도시 계획	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군 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
	2	도시계획 입안 시행
	3	시가지 및 도시구획 정리
	4	군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5	도시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6	택지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7	경전선 철도 이설
	8	광역권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9	개발촉진지구 지정

담당	분장 사무	
도시 개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	군 계획시설 개설계획 수립 및 편입부지 보상
	2	군 계획시설 개설공사 시행 및 감독
	3	도시공원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4	소도읍 육성 업무 및 섬진강체육공원 조성
	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담당	분장 사무	
도시 재생	도시재생, 지역·경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2	경관개선사업 추진
	3	지역·경관 및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4	광고물 등 허가·신고 및 지도 감독
	5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

담당	분장 사무	
건축 민원	건축인허가(민원)에 관한 사항	
	1	건축신고 및 허가업무
	2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업무
	3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 촉탁
	4	건축물 착공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
	5	건축물 대장정비 사업추진
	6	분양대상 건축물 분양승인

담당	분장 사무	
건축 행정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	
	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빈집 정비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3	위법건축물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4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관리
	5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
	6	재해주택 관리
7	주거복지(급여)에 관한 사항	

담당	분장 사무	
복합 민원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1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2	농지전용허가·협의·변경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3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4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준공 후 수질검사

건설교통과장

담당	분장 사무	
건설 행정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도로교통량 조사
	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	오지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5	도서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6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 폐지
	7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면허관리
	8	지하수 개발이용 인허가
	9	국도, 지방도사업, 소규모사업 보상관련업무 일체

담당	분장 사무	
농업 기반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	농업기반 조성 종합 기획·조정
	2	경지정리 사업
	3	농업용수 개발
	4	농업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5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6	농지개량사업 시행 인가
	7	정주권 개발사업
	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9	밭기반 조성사업
	10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1	공유(도유)재산 관리(농업생산기반시설 내)	

담당	분장 사무	
도로 관리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1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 및 정비
	2	도로공사로 인한 수익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3	접도구역 관리
	4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 단속
	5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
	6	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7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8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9	도로 설해대책
	10	관내 도로 교량관리
11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관련업무 일체	

담당	분장 사무	
지역 개발	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공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공모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3	신규마을조성사업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및 운영관리
5	금남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추진	

담당	분장 사무	
선진 교통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교통행정 종합기획·조정
	2	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등록 및 지도감독
	3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지도감독
	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5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6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안전총괄과장

담당	분장 사무	
안전 기획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1	안전총괄·안전문화, 사회안전 업무
	2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관리
	3	특별사업경찰 업무 지원
	4	각종 재난상황 관리(보고 및 초동대응)
	5	안전·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운영
	6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7	승강기 관리 업무
	8	재난배상책임보험 총괄
	9	지역축제안전관리
	10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11	여름철물놀이 안전관리
	12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13	안전문화운동 추진
14	안전한국훈련	

담당	분장 사무	
민방위 안전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
	2	비상대비 대책수립 업무
	3	전시 병력동원업무 지원
	4	예비군 육성 지원
	5	사회복무요원 관리
	6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7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8	가로등(보안등) 설치(단, 도로개설시 제외)
	9	가로등(보안등) 개보수 및 유지관리
	10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11	가로등(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 사항 처리
12	가로등(보안등) 수리용 차량 운영	

담당	분장 사무	
방재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	
	1	지역방재 계획 수립
	2	자연재난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대책
	3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추진
	4	재해위험지 조사 및 방재시설물 점검 및 관리
	5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	재해 사전대비 업무
	7	풍수해 보험 업무

담당	분장 사무	
하천 관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하천 정비·유지관리
	2	기성제 정비 및 하도개선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4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5	지방하천 및 소하천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관리
6	공유(도유)재산 관리(하천구역 내)	

담당	분장 사무	
통신 관제	통신 및 CCTV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	인터넷 전화망 및 전화교환시스템 관리
	2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3	전자정부통합망 관리
	4	지방행정 정보망 관리
	5	무선인터넷 존 구축 및 관리
	6	행정방송 및 방송실 관리
	7	CCTV 관제센터 운영 관리
	8	방법용 CCTV 설치운영
9	마을방송 운영관리	

해양수산과장

담당	분장 사무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 개발	1 해양관광개발 사업 및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
	2 국가어항 및 다기능 어항 개발에 관한 사항
	3 국가마리나 개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유수면(해면) 관리에 관한 업무
	5 수산행정 업무의 기획조정 및 총괄
	6 어촌종합개발사업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무
	7 연안정비 사업 계획 수립 및 연안오염 방지시설 사업
	8 어항시설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9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어촌환경 개선
	10 남해안시대 관련 해양개발사업 추진
	11 해양레저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담당	분장 사무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어업 생산	1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2 해면어업 면허 및 관리
	3 수산증식사업 및 사후관리
	4 어업 피해예방 및 보상
	5 어선등록 및 관리
	6 안전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예방
	7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8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담당	분장 사무
	내수면 어업, 내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내수면 개발	1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2 재첩 관련 산업 육성
	3 내수면 관리

담당	분장 사무	
섬진강 관리	섬진강 관련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섬진강 관련 업무 관리
	2	섬진강 유지관리
	3	국가하천구역 편입 토지 보상
	4	국가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관리
	5	국가하천 수변공원(4대강 사업구간) 관리
	6	공유(국유)재산 관리(하천구역 내)
	7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8	골재채취업 등록 및 관리
	9	공유수면(국토부)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항

산림녹지과장

담당	분장 사무	
산림 정책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	산림조성 종합기획
	2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풀베기)
	3	양묘·종묘 생산 및 수급관리
	4	임업단체 육성 및 지도관리
	5	산림분야 공모사업
	6	농림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7	임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 지도감독
	8	임산물 재해예방 및 보상 관리
	9	공유림 관리에 관한 업무
	10	백두대간 지원업무
11	산림 기본 통계, 임산물 생산 통계	

담당	분장 사무	
산림 보호	산림보호, 자연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1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예찰
	3	숲 가꾸기 사업
	4	산림사범 업무
	5	불법산림 형질변경 복구
	6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및 시행
	7	입목벌채 허가, 신고 및 입목 등기에 관한 사항
	8	임산물 굴·채취 허가 및 신고
	9	산림경영계획 인가
	10	송림공원 관리
	11	자연공원(국립공원, 군립공원) 관련업무 전반
12	산림보호 지도 단속 및 산지 정화	

담당	분장 사무	
산림경영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	
	1	산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2	산림입지 조사 및 구역 등의 지정 협의
	3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4	산사태 재해 예방 및 복구
	5	공설임도 계획수립 및 개설 관리
	6	임도시설 보수·구조개량 및 유지관리
	7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
	8	사방지, 보안림 지정 관리
	9	등산로 정비계획 및 조성관리
	10	임업진흥권역 관리

담당	분장 사무	
산림휴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	
	1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2	치유의 숲 조성사업
	3	수목원, 생태숲 조성 및 관리
	4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
	5	산림복지단지 조성
	6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숲해설사 관리
	7	삼화에코하우스 관리
8	금오산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담당	분장 사무	
가로수관리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가로수 조성 및 관리
	2	도로변 꽃길 꽃동산 조성 및 관리
	3	학교숲 조성 업무
	4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5	특색있는 하동숲 조성사업
	6	지방정원 조성
	7	마을쉼터 조성, 유지관리
8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	

산단조성과장

담당	분장 사무	
투자 유치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및 연구단지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1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및 국내기업유치 활동
	2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타킷기업 관리
	3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투자자 발굴 및 유치
	4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지원
	5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관리 및 운영지원
	6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및 기숙사 관리 및 활성화 대책 수립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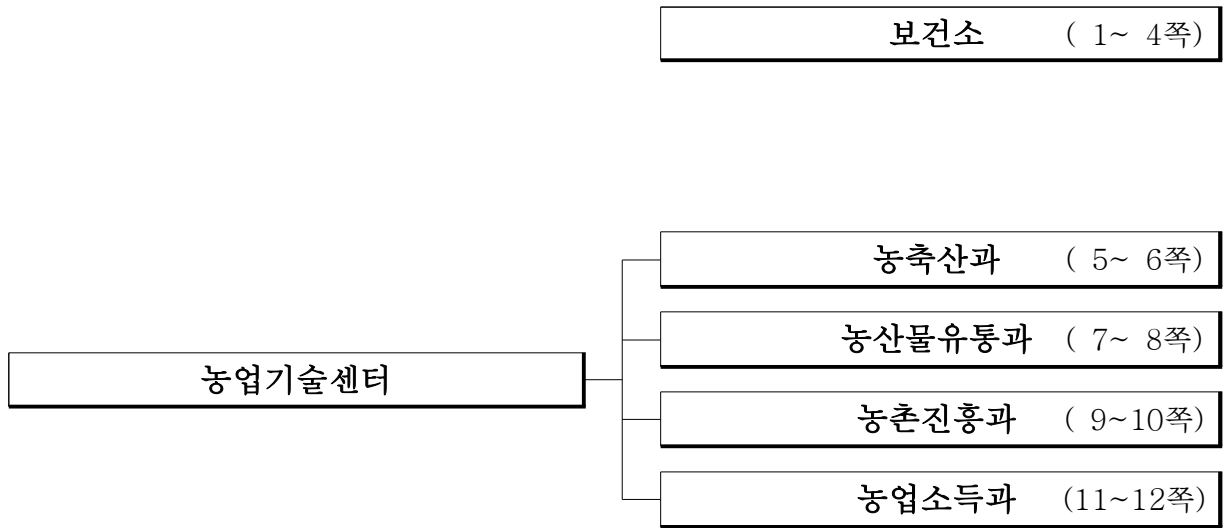
담당	분장 사무	
산단 개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	
	1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추진
	2	대송산업단지조성 및 사후관리
	3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운영 및 관리
	4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반시설(내부간선도로, 공업용수, 폐수) 사업 추진

담당	분장 사무	
산단 지원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조성 및 산업단지 보상에 관한 사항	
	1	신도시 개발지구 지정
	2	갈사만 배후도시 개발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5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7	두우배후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8	금성조선농공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9	경제자유구역개발 보상 업무 추진
	10	공공용지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11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보상민원 해결
12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업무 추진	

담당	분장 사무	
법률 지원	경제자유구역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	
	1	산단 소송 지원
	2	산단 고소·고발 업무 추진

[별표 2]

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9조 관련)



1. 보건소

보건소장

담당	분장 사무	
보건 행정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1	공중보건 의사 배치 · 복무 관리
	2	보건기관 시설물 관리
	3	보건지소 · 진료소 운영 및 지도
	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5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6	보건지소 의약품 및 각종 기자재 구매업무
	7	보건사업 업무기획 및 조정
	8	의료반 운영 및 각종의료지원 업무
	9	건강진단 등 신고
10	보건소 예산편성 및 세출예산 집행업무	

담당	분장 사무	
감염병 관리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	감염병 전담 대응체계 구축
	2	신종감염병 발생시 대책상황실 운영
	3	감염병 상황관리(24시간 긴급상황 대응)
	4	감염병 유행 및 집단발생 대응
	5	한센환자 관리지원 사업
	6	예방접종 사업
	7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관리
	8	소독의무대상시설관리
	9	결핵환자관리(등록, 검진, 관리)
	10	방역소독사업 (연막, 연무, 수리)
	11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및 각종 감염병 관리 웹 보고
	13	기생충퇴치사업
13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담당	분장 사무	
의약	예방의약에 관한 사항	
	1	의무 및 약물관리
	2	의료기관, 약국 행정처분
	3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4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신고·허가) 등
	5	약국 개설 및 변경신고 등
	6	마약류관리 및 장기이식
	7	보건의료분야 재난관리
	8	365 안심병동사업
	9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10	의료기기 및 화장품관리
	11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1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13	특수의료장비 관리

담당	분장 사무	
건강 지원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	
	1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및 지원
	2	국가암 조기검진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4	지역사회 건강조사
	5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6	저소득층 특수질환 조기검진사업
	7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8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9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10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1	모성아동건강 지원사업
12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담당	분장 사무	
건강 증진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진료 및 전담인력관리)
	3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4	만성질환관리사업(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5	금연사업(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6	모자보건사업
	7	재가장애인 등록 및 재활치료
	8	경로당 방문진료
	9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10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11	어르신틀니 및 구강보건사업
	12	건강행태개선 사업
13	분만산부인과(공공산후조리원) 관리 운영	

담당	분장 사무	
치매 안심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	치매예방 관리사업
	2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4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5	치매조기 검진사업
	6	치매환자쉼터 운영사업
	7	치매가족 지원사업
	8	치매 인식개선사업
	9	지역사회 자원강화사업
	10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11	치매안심마을 운영
12	치매상담 및 등록사업	

담당	분장 사무	
진료	진료에 관한 사항	
	1	건강검진 업무
	2	민원 제증명 발급, 수입금 관리 등 민원실 운영
	3	성병, 에이즈 등 각종 검사관리
	4	건강검진, 민원 병리검사 관리
	5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 등
	6	진료비 청구업무
	7	환자진료(일반,치과,한의학,물리치료)에 관한 업무

담당	분장 사무	
안전 위생	공중이용시설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	식품영업(신고·허가)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업소 개설업무
	3	위생지도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4	무허가업소 지도단속
	5	국민건강 위해식품 단속
	6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리
	7	식품·공중위생 교육·홍보
	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9	소비자 식품·공중위생감시원 운영관리	

2.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담당	분장 사무	
농업 정책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센터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경관보전 직불제 및 경관작물 축제
	4	농촌특산단지 및 농업법인 육성지도
	5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지방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7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8	농어촌 진흥기금 관리 운영

담당	분장 사무	
농업 지원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1	양곡 수급관리
	2	식량작물(쌀, 밭농업) 직불금 지원
	3	FTA 대책 및 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 직불제
	5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6	농업인용자이전보조금지원사업

담당	분장 사무	
축산 경영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	한우산업 육성
	2	낙농산업 육성
	3	양계산업 육성
	4	양돈산업 육성
	5	양봉, 토봉산업 육성
	6	기타 가축 육성
	7	축산물 브랜드 육성
	8	축사환경개선

담당	분장 사무	
가축 위생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1	가축방역 및 약품지원 사업
	2	가축 질병예찰 및 병성감정
	3	공수의 지도 감독
	4	공동방제단 운영
	5	반려 및 유기동물 관리
	6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및 보상
	7	축산물 위생 전반

담당	분장 사무	
농기계 지원	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
	2	농업기계 사후봉사 업체관리
	3	농업기계화 촉진 및 실수요자 교육
	4	농업 기계화사업
	5	농기계 보관 창고 관리
6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농산물유통과장

담당	분장 사무	
수출 지원	농·특산물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1	농·특산물 수출관련 전반
	2	수출확대 종합계획 수립
	3	해외시장 개척 활동 및 홍보
	4	수출전문업체 및 국내외 바이어 육성관리
	5	수출농단 및 관련시설 지원관리
	6	수출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
	7	수출홍보 마케팅 지원

담당	분장 사무	
유통 마케팅	농·특산물의 유통·마케팅에 관한 사항	
	1	농산물 국내유통 관련 전반
	2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3	농산물의 원산지 관리 및 지도
	4	농·특산물의 쇼핑몰 운영관리
	5	특산물의 마케팅 지원
	6	온라인 판매처 확보 등 판로 개척

담당	분장 사무	
농산물 가공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2	농산물가공창업지원 및 육성
	3	농업인 소규모 가공산업 지원 및 육성
	4	농산물 가공관련 연구회 육성 지원
	5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및 보급
	6	농산물 소득 활동 지도

담당	분장 사무	
로컬 푸드	농·특산물의 유통·마케팅에 관한 사항	
	1	지역푸드플랜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2	음식(문화)관광 활성화
	3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4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추진
	5	로컬푸드 가공활동 육성 및 지원
	6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사업

담당	분장 사무	
디자인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에 관한 사항	
	1	포장디자인 개발 활용
	2	농산물 포장재 통합 관리 및 지원
	3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4	농산물 브랜드 통합관리 및 지원
	5	수출포장 디자인 개발 및 지원

농촌진흥과장

담당	분장 사무	
농업 인력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2	농업인 단체 육성 및 관리
	3	농업인 품목 연구회 조직 육성에 관한 사업
	4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
	5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6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사업
	7	농업인 전문역량개발 교육
	8	농업경영 개선지도
9	농업인 정보화 촉진사업	

담당	분장 사무	
농촌 관광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1	농촌체험관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2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3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관리 지도
	4	농산물 및 소규모 마을축제
	5	농가민박, 관광농업 육성 및 관리
6	농촌관광 체험행사 지원 및 종합계획 수립	

담당	분장 사무	
농촌 자원	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1	농촌자원사업의 계획 및 평가
	2	농작업환경개선 지도
	3	생활문화전승 및 기술지원
	4	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 육성
	5	생활개선회 육성 및 관리
	6	농촌여성 활력 증진교육
	7	향토음식 발굴 및 보급
8	농촌교육농장육성 및 관리	

담당	분장 사무	
귀농 귀촌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1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3	귀농귀촌인 관리·교육 및 지도
	4	도시민유치 및 귀농창업 지원사업
	5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및 지도
	6	후계농업경영인 및 산업기능요원 선정·관리
	7	한국 농수산대학 졸업생 사후관리

농업소득과장

담당	분장 사무	
스마트 농업	농업의 신소득작물 스마트농업 총괄에 관한 사항	
	1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관리
	2	친환경농업단지 및 생태농업단지 조성
	3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및 친환경인증 활성화
	5	과학영농시설 운영
	6	지역농업개발센터 종합운영
	7	기능성 신소득작목 육성
	8	인공지능 도입 스마트농업 총괄

담당	분장 사무	
식량 특작	식량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	
	1	식량생산 종합계획 수립
	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
	3	고품질 쌀 생산 및 기술지도
	4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 및 종자업 등록
	5	농약 안전 사용 및 현장기술 지도
	6	토양·식물체·관개수 등 환경농업 실태조사 및 분석
	7	농업재해 조사 및 복구 지원사업
	8	버섯재배 및 시범사업 추진지도
	9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10	잠업 기술 지도
11	특작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	

담당	분장 사무	
원예 과수	원예·과수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	원예산업 종합계획 및 생산
	2	원예작물 수출전략 작목 개발 및 농가보급
	3	채소·화훼·과수 지역 특화품목 육성·지도
	4	시설채소·노지채소 신기술 보급지도
	5	채소 및 화훼분야 소득작목 개발
	6	시설채소 육성 및 지원사업
	7	원예작물 농약 안전사용 및 병해충 방제
	8	과수 종합계획 수립 및 생산
	9	FTA대응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10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담당	분장 사무	
드론 활용	드론 관리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	드론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2	드론활용 영농 기술 접목 사업 발굴 및 육성
	3	드론활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 지원
	4	드론활용 안전관리지도 및 홍보
	5	드론활용 전문인력양성 기술교육
6	드론활용 일자리 창업지원	

[별표 3]

읍·면장의 직급(제10조 관련)

읍·면	직 위	직 급
하동읍 행정복지센터	하동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화개면사무소	화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사무관
악양면사무소	악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적량면사무소	적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횡천면사무소	횡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고전면사무소	고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남면사무소	금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성면사무소	금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진교면 행정복지센터	진교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양보면사무소	양보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천면사무소	북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청암면사무소	청암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사무관
옥종면 행정복지센터	옥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 1202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을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699	351	72	63	13	22	178
정 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 반	일반직 계		668	347	72	38	13	22	178
	4급 소계		4	4					
	서기관·기술서기관		4	4					
	4~5급 소계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보건진료사무관		1		1				
	5급 소계		38	17	1	5	2	1	12
	행정		4	3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5	5					
	행정·농업		3	1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시설		4	1				1	2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4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2						2
	행정·해양수산·시설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지도관		2			2			
	농업·지도관		2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6급 소계		166	84	14	10	2	5	51
	행정		9	9					
	세무		1	1					
	속기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6	6					
	운전		4			1			3
	행정·세무		14	8	1			1	4
	행정·사회복지		10	6				1	3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21	6		4		1	10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8	16					2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2	1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6						6
	행정·사회복지·시설		4	1					3
	행정·세무·농업		8	3					5
	행정·세무·시설		2	2					
	행정·세무·전산·농업		3	1			1		1
	행정·전산·농업		2	1				1	
	행정·전산·방송통신·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6	3					3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보건·간호		6		3				3
행정·시설·환경		1	1						
행정·해양수산·보건		2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행정·공업·환경·시설	4	4					
	행정·농업·녹지·환경	3	1					2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7급 소계		188	95	19	10	4	9	51
	행정		20	14		1	2	1	2
	세무		1	1					
	전산		1	1					
	사회복지		9	2				1	6
	속기		1				1		
	공업		2	2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시설		16	11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수의		2			2			
	운전		11	3	2			2	4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7	6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9	6		1		2	10
	행정·시설		16	12					4
	행정·환경		2	2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보건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농업·수의		1			1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2						2
	행정·세무·시설		5	2			1		2
	행정·전산·농업·방송통신		4	1		1			2
	행정·전산·시설		2	2					
행정·농업·녹지		4	3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8	5					3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3	1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보건·환경	3	1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3	2					1
	행정·공업·시설·통신운영	3	2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8급 소계		151	70	33	3	2	3	40
	행정		15	8			2		5
	세무		1	1					
	사회복지		6	2		1		1	3
	행정·농업·방호		1			1			
	공업		1						
	해양수산		2	2					
	보건		12	2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5		5				
	식품위생		1		1				
	환경		1	1					
	시설		10	6					4
	행정·세무·농업·시설관리		2	2					
	운전		6	1					5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시설		8	3				1	4
	행정·전산		2	2		1			
	행정·전산·농업		10	2					7
	행정·해양수산·시설·방재안전		5	3					2
	행정·시설		9	9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5	5					
	농업·녹지		4	4					
	행정·보건·간호		4	1	3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9	3					6
	행정·농업·시설		7	5					2
	행정·보건·환경		5	2				1	2
행정·공업·시설		2	2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일 반	9급 소계		120	77	4	10	1	4	24
	행정		20	14		2		2	2
	사회복지		18	7				1	10
	환경		2	2					
	공업		5	5					
	해양수산		1	1					
	보건		2	2					
	운전		3				1		2
	행정·세무		5	5					
	행정·사회복지		9	5				1	3
	행정·농업		8	3		3			2
	행정·시설·방호		18	18					
	농업·녹지·시설		2	2					
	농업		2			2			
	보건·간호		3		3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전산·통신		3	2		1			
	행정·세무·시설		4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7	3		2			2
행정·환경·시설·방재안전		5	4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별 정	별정직 계		3	1			2		
	5급 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		1				1		
	6급 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 구 지 도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u>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u>"과 "<u>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u>지방공무원의 직급 · 직렬별 정원</u>----- ----- -----.</p>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 1203 호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군은”을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인감증명서”를 “자필서명된 사용승낙서와 신분증 사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급 수 공 사 신 청 서									
<p>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승인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수도계량기와 옥외 급수용구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귀 군에 기부 채납하고 같은 조례 제23조에 규정된 관리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함.</p>									
수도꼭지 위치	하동군 읍면 리			번지					
급수종별				공사구분	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 변경				
월소요량				급수전수 및 규격	m/m 개				
건물허가유무	허가번호		허가 년월일		건축주	(남, 여)	확인자	(남, 여)	
<p>년 월 일</p> <p>신청자 주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인)</p>									
하동군수 귀하									
승 락 서									
<p>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 본인 소유토지 건물 내 급수 용구 설치 급수관을 분기 인용함을 승낙함</p>									
수도꼭지 소유자		수도꼭지 번호			설계수수료 납부확인		사 용 료 납부확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접 수 및 처 리 과 정									
처 리 기 관			처 리 과 장						
접 수	경 유	최 종							
민원과		수 도 사업과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성안 → 결재					

[별지 제2호 서식]

공용 급수전 설치 신청서

공용 급수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제7 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남, 여) (서명 또는 인)

수 익 자 주 소	성 명	가 족 수	서 약 인
읍·면 번지		(남, 여)	
읍·면 번지		(남, 여)	
읍·면 번지		(남, 여)	

- 첨부 : 1. 급수공사 신청서(규칙 제1호서식)
 2. 수도꼭지 설치장소 약도
 3. 급수 공사비 자체 부담 확인서
 4. 공용 급수전 기부 체납서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이 하동군 읍·면 리 번지 소재 공설공동 급수전의 관리책임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

1. 급수요금은 소정 기일 내에 수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납기 내에 군 금고에 납부함.
2. 급수를 도용, 남용 또는 타인에게 분여하는 행위를 일체 엄금함.
3. 임의로 급수용구 또는 양수기를 이동, 변경, 개조, 증설 또는 훼손, 누전되도록 하지 않음.
4. 수도 사용자의 오물 및 의류, 세탁 등으로 공중위생에 유해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5. 그 밖의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위반 처분에 명시되어 있는 각 항을 준수함.

년 월 일

하동군 읍·면 리 번지
 공설공동 급수 지정판매인 (남, 여)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급수공사()설계 예산서 및 수도꼭지 실태카드

(앞면)

수용가번호												Tel.		
급수공사()설계 예산서														
설 계 결 재	과 장	수도꼭지 위 치						급수시설	m/m에서 분기 m		준 공 결 재	과 장		
	주 사	청구자	주소 성명	(남, 여)			계량기 도급자	m/m 호		주 사				
	설 계	급수종별	지점수			급수공사비				담 당				
		설계년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납 제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공사 정산		년	월	일					
	착공년월일	년	월	일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설 계 내 역 서																
명 칭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정산	비고	명 칭	규격	수량	단가	단위	금액	정산액	비고	
PE 관			m					천공터파기								
PE 관			m					천 공 인 부								
PE 관			m					보호통설치								
PE 소켓			개					계량기설치								
PE 소켓			개					나사관접합								
청동벨브소켓			개					"								
이 경 소켓			개					PE관 접합								
(레 듀 샤)			개					토 공								
부동급수주			개					con.c개 관로								
								기 청공								
								ASP 관로								
								깨기 청공								
								관모래 관로								
								부설 청공								
수 도 꼭 지			개					복구(관로)								
캡			개					복구(천공)								
정 티			개					캣 타 기								
이 경 티			개													
가 지 새 들			개													
캣 타 기			m					소 계								
			m					간접노무비								
태 프 룬			개					기타경비								
계량기보호통			개					일반관리비								
			m					계								
복구 자재대	모래		개소					이 운								
	관로		m					계(자재비포함)								
	천공		m					부 가 세								
			개					폐기물처리비								
사급자재대			식					총 계								
								수 수 료								
관급자재대			개					관급자재대								
								분 담 금								
계								총 계								
수 수 료	설계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계															
분담금																
현 장 복 명 서 현장 조사한바 신청서와 같으며, 관말수압 양호 허가 함으로 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불량 년 불가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뒷면)

수도꼭지 실태 카드

업 종 변 경				명 의 변 경			
년월일	변경업종	성 명	사 유	년월일	주 소	성 명	사 유

위 치 도

배 관 상 세 도

[별지 제5호 서식]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아래와 같이 급수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수도꼭지 소재지	하동군 읍·면 리	번지
수도꼭지 소유자	(남, 여) 사용자 또는 관리자	(남, 여)
급수종별	급수용	
변경코자하는 급수종별	급수용으로 변경	
변경사유의 급수실태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인)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견	수도꼭지 대장정리	조정부 정리	수 납 (체납) 부정리	검침카드 정 리	결 재			년월일
					담당	주사	과장	
급수용으로 변경								업종 변경 하고자 함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직권업종 변경조서

수도꼭지 소재지	급수꼭지 번호	수도꼭지 소유자	급 수 종 별		변경사유 급수실태
			현업종	변경업종	
		(남, 여)			

위와 같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조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 수도관계공무원

직 성명 인

하동군수 귀하

급수실태 조사자의 의견	수도꼭지 대장정리	조정부 정 리	검침카드 정 리	수 납 (채납) 부정리	결 재		
					담당	주사	과장

[별지 제7호 서식]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신규·변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주 소 : 하동군 읍·면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수도꼭지 번호 : 번 소유자성명 : (전화번호 :)

위 소재지의 주택에 아래와 같이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구 분할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 세대주 명부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1 (남, 여)		6 (남, 여)	
2 (남, 여)		7 (남, 여)	
3 (남, 여)		8 (남, 여)	
4 (남, 여)		9 (남, 여)	
5 (남, 여)		10 (남, 여)	

년 월 일

주민등록 확인	담당자 대장정리

신청인 (남, 여)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 접수증

접수번호 : 적용시기 : 월분부터

접수일자 : 신청가구 : 영업용 가구, 가정용 가구

수도꼭지 번호 : 수용가성명 :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7-1호 서식]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겸업종)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주 소 : 하동군 읍·면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수도꼭지 번호 : 번 소유자성명 : (남, 여)
(전화번호 :)

위 소재지의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분할 적용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업 소 명		소유주	(남, 여)				
월평균사용량		현업종					
가정용세대주	1	(남, 여)	2	(남, 여)	3	(남, 여)	
4	(남, 여)	5	(남, 여)	6	(남, 여)	7	(남, 여)

년 월 일

주민등록 확인	담당자 대장정리

신청인 (남, 여)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수도사용료 분할적용 신고 접수증(겸업종)

접수번호 : 적용시기 : 월분부터
접수일자 : 신청가구 : 겸업종 가구, 가정용 가구
수도꼭지 번호 : 신청자성명 :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8호 서식]

급수장치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아래 전용 수도에 대해서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명의 변경하고자 신고함.

승계자인 신고인 년 월 일자로 수도 사용량 그 밖의 급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계승하겠습니다.

수도꼭지 소재지	하동군	읍면	리	번지	경 유
급수종류		급수종별			
수도꼭지소유자	(남, 여)	수도꼭지 번호			
이동사유					

신고인(승계자)

주소 :

성명 : (남, 여)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수도꼭지 대장정리	검 침 부 정 리	수 납 (체 납) 부 정 리	결 재			명의변경 조치 하고자 함
			담당	주사	과장	

[별지 제9호 서식]

급수장치 폐전 정지 개선 신고서

아래 전용 수도에 대해서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장치 폐전 (정지·개선)하고자 신고합니다.

수도꼭지 소재지	하동군 읍·면 리	번지	경유
급수종류		급수종별	
수도꼭지 번호	동 제 호	년 월 일	
사유			

년 월 일

신고인 주소 :

성명 : (남, 여)(서명 또는 인)

수도꼭지 대장정리	검 칩 부 정 리	수 납 (체 납)	결 재			조치하고자 함 년 월 일
			담당	주사	과장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수도계량기 점검표

업 종		수도꼭지 소 재 지	하동군 읍·면 리 번지
수도꼭지 번 호		소 유 자	(남, 여)
		사 용 자	(남, 여)

월분	점검일자	지침수(m ³)	사용량(m ³)	검침원 확인	비 고
2월	월 일				
1월	월 일				
2월	월 일				
3월	월 일				
4월	월 일				
5월	월 일				
6월	월 일				
7월	월 일				
8월	월 일				
9월	월 일				
10월	월 일				
11월	월 일				
12월	월 일				

[별지 제11호서식]

수도계량기 수리 시험 청구서

- 1. 급수전소재지 : 하동군 읍·면 리 번지
- 2. 종 별 : 용 급수전 번호 : 호
- 3. 소 유 자 : (남, 여)
- 4. 청 구 사 유

상기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 계량기에 대해서 (수리, 시험) 청구하니 (수리,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여)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접수 및 처리과정

처 리 기 간			처 리 과 정
접 수	경 유	최 종	
민원과		수도사업과	접수→공부대조→현지→수리, 시험→결재

[별지 제12호 서식]

상수도 누수 감면신청서				
신청인	성 명 (수용가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누수수선일자		누수수선비용	
누수지점 및 발생사유				
이의내용				
고 객 번 호		누수확인 일 자		
업 종		구경(mm)		
월평균 사용량		옥 내 누 수 량		m ³
<p>「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남, 여) (서명 또는 인)</p> <p>하동군수 귀하</p>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공업체 누수수선 확인서 1부 2.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각 1매 3. 그 달 상수도요금 고지서 1부 			

[별지 제13호 서식]

상수도시설물 손괴자 확인서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남, 여)
- 연 락 처 :

위 본인(회사)은 본 장소에서 상수도관 D= mm()부분을
 년 월 일 시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며,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비용 및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제45
 조(별표5)에 규정된 손괴자 부담금에 대해서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손 괴 위 치 :
- 손 괴 장 비 :
- 파 손 상 태 :
- 신고자(증인) : (남, 여)
- 누수복구시간 :

년 월 일

손괴자 : (남, 여) (서명 또는 인)

참석자 : (남, 여)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하동군 상수도 검침위탁자 지정서

주 소 :

성 명 :

지정기간 :

지정구역 :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하동군 상수도검침 위탁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별지 제15호 서식]

위탁계약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	사무소명칭	하동군 상수도 검침위탁사무소	사 업 자 등록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		
	사무실위치	(㉠)		
지정 연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검침업무 계약기간 연장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남, 여) (서명 또는 인)</p> <p>하동군수 귀하</p>				
<p>첨부서류</p> <p>○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p>				

[별지 제16호 서식]

(앞 면)

제 호

증 명 서

소속 : **하동군 수도사업과** 담당

직위 : _____

성명 : _____ 생년월일

사진

위의 사람은 수도관계공무원 및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해서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하 동 군 수

54mm×85mm 인쇄용지(특급) 190g/m²

(뒷면)

자 격 증 명 사 항

1.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시행
2.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중지와 폐전
3.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등의 징수
4.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장치 등의 조사 및 검사
5.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정수처분
6.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하동군 수도급수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u>조례</u> 제4조제1호 중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u>조례</u> 제6조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군</u>은 급수장치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도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5. ~ 7. (생략)</p> <p>제8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① (생략)</p>	<p><u>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하동군 수도급수 조례</u>」 ----- ----- -----.</p> <p>제2조(정의) ① 「<u>하동군 수도급수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하동군수</u>(이하 "군수"라 한다) <u>는</u> ----- -----.</p> <p>5. ~ 7. (현행과 같음)</p> <p>제8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① (현행과 같음)</p>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이용하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기부채납원 및 인감증명서
- 6.·7. (생략)

③ (생략)

제16조(공용급수전의 관리)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공설 공용급수전과 선박 철도용 급수대행인은 해당 급수전에서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선박용 급수에 있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②·③ (생략)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 5. ----- 자필서명된 사용승낙서와 신분증 사본
- 6.·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용급수전의 관리) ① ---

-----.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②·③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고시 제2019 - 77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15.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25-24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3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섬진강대로 1262-1 외 169건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17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5.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 동 사 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493-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25-24	2019 0515		2007 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 으로부터 서쪽에 위 치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882-3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정안로 213-33	2019 0515		2007 0618	도로구간 인근에 위치 한 정안봉이라는 산 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4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매화골떡 점길 234	2019 0515		2007 0618	매실이 많이 나는 마 을특성에 떡점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311-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1길 61	2019 0515		2009 0302	목도라는 자연마을이 름을 사용하여 일련 번호방식의 첫번째 도 로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14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339-6	2019 0515		2007 0618	수로왕이 칠왕자를 만 나려고 왔다가 머문 곳으로 범왕시를 창건 하였다하여 붙여진 자 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1128-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삼장길 133-19	2019 0515		2008 0402	연산조매 유명한 조지 서가 생장안 곳인데 지족당이 9번 장원을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산 317-2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상우길 30-60	2019 0515		2007 0618	원우의 윗마을이라 하 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산 95-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164-1	2019 0515		2007 0618	염등만수 정자 숲의 서쪽 마을에서 유래 된 정서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8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주포중앙 길 17-9	2019 0515		2008 0402	주포 마을내 중앙길로 주포중앙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234-5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중도길 90-21	2019 0515		2007 0618	중도라는 지명을 도로 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93-4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지소1길 18-1	2019 0515	2009 0302	옛날 종이를 생산하던 마을이라 하여 붙여 진 자연마을이름에 일 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중대리 산 12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74-14	2019 0515	2007 0618	중대리 아래쪽에 있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 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83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계길 95	2019 0515	2008 0402	횡계라는 자연마을이 름 반영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9-78호

주 소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485 해양apt		
성명(법인명)	정인*		
범 인 번 호			
하 천 명 칭	고전천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고전면 성천리 1201-33(천) *인근:고전면 성천리 1254(답)		
점 용 면 적	1,000㎡		
최 초 허 가 일	2019년 5월 20일		
점 용 기 간	2019. 5. 20. ~ 2023. 5. 20.		
허 가 조 건	불임 참조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5월 20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제출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하고, 허가시설물의 다른 시설물이 추가설치 되거나 우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만료 1개월 전까지 하천점용 연장 허가신청 하여야 합니다.)
2. 본 점용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피허가자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피 허 가자 본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점용 및 공작물 설치로 편입되는 하천구역내의 사유 토지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또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4.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하천법에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협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않되며, 민원발생시 점용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접지역이 하천임을 감안하여 오폐수 유입방지를 위해 점용지 유지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등 국가 및 공익상의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당해 필지의 공작물(건물, 기타 축조물)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 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8. 제방 인접 공작물 설치 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하천법 95조에 의거 하천 점용 허가 취소 및 고발 조처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9-7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정영*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010-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장소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822-1(구) (인접 진교리 500(대))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64㎡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5년 (2019. 5. 20. ~ 2023. 5. 20.)

점용·사용의 유형

기타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5월 20일

하 동 군 수 (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연장 허가 공고

공고 제2019-80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주식회사 제일피앤디		
	대표자 (성 명)	이강완	주소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8-2
소하천명		냉정천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서황리 1380 (인근: 서황리 1249)		
	면적	70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m ²
	기간	2019.5.23.~2023.5.23.		
	목적 및 사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진출입로 이용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하천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 천 점 용 (변 경) 허 가 증

(해양수산과) 제2019-81호

주 소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성명(법인명)	사단법인 알프스하동 섬진강재첩축제위원장		
생년월일	476-82-00047		
하천명칭	섬진강	하천등급	국가하천
점용장소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53번지 ※ 인근지번 광평리 440-5		
점용면적	65,930㎡ (대지면적329,524㎡)		
최초허가일	2019년 5월 27일		
점용기간	2019. 6. 1.~ 2019. 8. 31.		
허가조건	1. “붙임참조”(허가조건) 준수할 것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5월 27일

하 동 군 수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본 공작물의 설치는 귀 기관에서 직접 감독(또는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출한 도면 및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착수 시에는 공사착수신고서(예정공정표 첨부)를 제출해야 하며, 공사완료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공사 시행에 따른 하천의 오염이나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시행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하상 또는 고수부지 등에 적치하지 않아야 하며, 하천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우기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는 중지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기상특보시 즉시 철거 가능)
5. 공사시행 시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부착)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점용허가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는 하천시설물(제방 및 호안 등)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6. 점용허가 구간 공사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 보상 요구 등 모든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7. 하천점용 기간동안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하천점용으로 인한 민원발생등 공익을 위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쓰레기 및 오수 등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9.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10. 부득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점용 공사기간 및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및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9 - 82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3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409-85 외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5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511-1 외 33건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3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5.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 동 사 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산2-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409-85	2019 0530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종+ 수곡 면)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554-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72	2019 0530		2007 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 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 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107-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278-18	2019 0530		2007 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 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 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산85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450-110	2019 0530		2009 0302	적량면의 중앙을 통과하 는 간선도로로 면이름에 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8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매화골떡 점길 156-15	2019 0530		2007 0618	매실이 많이 나는 마을 특성에 떡점이라는 자연 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708-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배섬길 48-1	2019 0530		2007 0618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다 하여 붙여진 옛 지명에 서 유래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225-1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길 30-39	2019 0530		2007 0618	백련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25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길 32-32	2019 0530		2008 0402	법대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공항리 1406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101-1	2019 0530		2008 0402	새와 같이 생겼다하여 붙 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56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길 45-42	2019 0530		2008 0402	마을앞 뚝뒀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격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 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리 121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이터길 105	2019 0530		2008 0402	임지왜란때 양씨와 이씨 가 피란하였다 하여 붙 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505-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산서원 길 28-2	2019 0530		2008 0402	옥산서원이 위치한다 하 여 옥산서원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8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길 14-27	2019 0530		2007 0618	마을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874-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115-78	2019 0530		2007 0618	선돌이 있어 입석이 되어 버린 법정리명을 도로명 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880-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대비 길 80-16	2019 0530		2009 0302	정금과서 대비로 이어지 는 도로로서 행정리명의 명칭을 합성하여 도로명 에 반영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3.3.23>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9- 83호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10번길 13		
성명(법인명)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120-82-00052		
하 천 명 칭	강화천, 황천강, 고전천, 고하천, 주교천, 지례천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경남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805-4, 825-8		(23㎡)
	경남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159-6, 1189-5		(64.4㎡)
	경남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1083-4, 275-2		(25.2㎡)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4-2, 151-3		(8.9㎡)
	경남 하동군 고전면 명교리 380-4, 179-4		(29.5㎡)
	경남 하동군 고전면 명교리 2-1, 718-2		(6.9㎡)
점 용 면 적	157.9㎡		
최 초 허 가 일	2019. 5. 31.		
점 용 기 간	2019년 5월 31일 ~ (영구)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5 의거)		
허 가 조 건	별도 붙임과 같음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하동군수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하천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9-8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안 인 *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010-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장소

점용 : 악양면 정서리 1052(구) 인근 : 악양면 정서리 274-3(대)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35㎡

(또는

㎡)

목적

토지의 점용

기간

2019. 6. 2. ~ 2023. 6. 2.

점용·사용의 유형

단순 사용(현황유지)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5월 30일

하 동 군 수 (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연장 허가 공고

공고 제2019-87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주)지에스이		
	대표자 (성 명)	유석형	주소	하동군 적량면 황금길 19
소하천명		연화소하천		
공사(점용·사용)개요	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47-2(인근:비파리 641-2)		
	면적	11.4㎡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기간	2019. 6. ~ 2029. 6. (10년)		
	목적 및 사유	도시가스 배관 매설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고시 제 2019 - 88호

하동군 납세자권리헌장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납세자권리헌장 요지 (낭독용]

□ 세무조사에 앞서 법령에 따라 제공된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신고내용은 성실하다고 추정되며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귀하는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중복조사를 받지 않으며 조사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 귀하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과세정보는 비밀로 보호 받으며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 등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거나 납세자보호관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동군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사건 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9 - 90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신설한 지적기준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 지구명 : 상신흥지구, 청수지구
- 점 수 : 지적도근점 67점
- 지적기준점의 측량성과 보관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 문 의 : 하동군청 민원과 055-880-2083

2019년 6월 11일

하 동 군 수

■ 신설 지적도근점

기준점 명칭번호	기준점번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관측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도근점	5280	악양면 신흥리 415	35-09-54. 9060	127-43-18. 6296	171.085	중부	285666. 843	265763. 431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3. 8367	127-43-15. 9198	143.153		185358. 71	265689. 50				지역
도근점	5281	악양면 신흥리 401-4	35-09-52. 7932	127-43-18. 9367	167.621	중부	285601. 786	265771. 677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1. 7237	127-43-16. 2269	139.690		185293. 66	265697. 75				지역
도근점	5282	악양면 신흥리 438-3	35-09-53. 0019	127-43-23. 8033	182.863	중부	285609. 113	265894. 791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1. 9323	127-43-21. 0939	154.930		185300. 98	265820. 86				지역
도근점	5283	악양면 신흥리 459	35-09-53. 7571	127-43-27. 0853	196.428	중부	285632. 991	265977. 682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2. 6876	127-43-24. 3762	168.492		185324. 86	265903. 75				지역
도근점	5284	악양면 신흥리 368	35-09-54. 5474	127-43-28. 7072	203.094	중부	285657. 647	266018. 550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3. 4780	127-43-25. 9983	175.158		185349. 51	265944. 62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도근점	5285	악양면 신흥리 508-2	35-09-54.7005	127-43-31.3041	212.823	중부	285662.842	266084.237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3.6311	127-43-28.5954	184.885		185354.71	266010.31				지역
도근점	5286	악양면 신흥리 515-5	35-09-55.9971	127-43-36.3831	236.117	중부	285703.740	266212.481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4.9277	127-43-33.6749	208.172		185395.60	266138.56				지역
도근점	5287	악양면 신흥리 산 42-4	35-09-56.540	127-43-38.5339	247.231	중부	285720.871	266266.789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5.4707	127-43-35.8258	219.284		185412.73	266192.87				지역
도근점	5288	악양면 신흥리 589-1	35-09-58.0367	127-43-44.5483	266.156	중부	285768.111	266418.660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6.9675	127-43-41.8408	238.202		185459.97	266344.74				지역
도근점	5289	악양면 신흥리 569	35-09-54.8282	127-43-38.5725	243.826	중부	285668.122	266268.152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3.7587	127-43-35.8644	215.881		185359.98	266194.23				지역
도근점	5290	악양면 신흥리 581	35-09-53.9580	127-43-40.4960	255.108	중부	285641.661	266317.027	2019.01.14~15	PVC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2.8884	127-43-37.7881	227.161		185333.52	266243.10				지역
도근점	5291	악양면 신흥리 547	35-09-52.7228	127-43-41.4333	252.994	중부	285603.766	266341.026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1.6530	127-43-38.7254	225.047		185295.63	266267.10				지역
도근점	5292	악양면 신흥리 산 50	35-09-51.2245	127-43-43.9978	264.611	중부	285558.067	266406.267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0.1545	127-43-41.2901	236.663		185249.92	266332.34				지역
도근점	5293	악양면 신흥리 551	35-09-52.2818	127-43-39.4206	240.985	중부	285589.802	266290.189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1.2120	127-43-36.7126	213.041		185281.66	266216.26				지역
도근점	5294	악양면 신흥리 552	35-09-52.1176	127-43-37.2698	232.461	중부	285584.342	266235.796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1.0478	127-43-34.5616	204.518		185276.21	266161.87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도근점	5295	악양면 신흥리 518	35-09-54. 2863	127-43-36. 4886	235.972	중부	285651. 034	266215. 535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3. 2168	127-43-33. 7803	208.028		185342. 90	266141. 61				지역
도근점	5296	악양면 신흥리 518	35-09-53. 6199	127-43-34. 9924	229.663	중부	285630. 223	266177. 822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2. 5503	127-43-32. 2840	201.722		185322. 08	266103. 89				지역
도근점	5297	악양면 신흥리 535	35-09-51. 2510	127-43-35. 9046	222.694	중부	285557. 383	266201. 441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0. 1811	127-43-33. 1962	194.754		185249. 25	266127. 51				지역
도근점	5298	악양면 신흥리 535	35-09-50. 7886	127-43-34. 3196	214.395	중부	285542. 839	266161. 431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39. 7187	127-43-31. 6111	186.456		185234. 70	266087. 50				지역
도근점	5299	악양면 신흥리 528	35-09-50. 7326	127-43-33. 2238	210.737	중부	285540. 911	266133. 711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39. 6627	127-43-30. 5152	182.799		185232. 78	266059. 78				지역
도근점	5300	악양면 신흥리 524-2	35-09-52. 8125	127-43-33. 3399	218.261	중부	285605. 035	266136. 182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1. 7428	127-43-30. 6313	190.322		185296. 90	266062. 25				지역
도근점	5301	악양면 신흥리 484-1	35-09-53. 1864	127-43-30. 7981	211.022	중부	285616. 087	266071. 772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2. 1168	127-43-28. 0893	183.085		185307. 95	265997. 84				지역
도근점	5302	악양면 신흥리 488	35-09-52. 2379	127-43-29. 9833	207.633	중부	285586. 705	266051. 365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1. 1682	127-43-27. 2745	179.697		185278. 57	265977. 44				지역
도근점	5303	악양면 신흥리 490	35-09-51. 1544	127-43-30. 4386	199.239	중부	285553. 396	266063. 130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40. 0846	127-43-27. 7298	171.303		185245. 26	265989. 20				지역
도근점	5304	악양면 신흥리 500-3	35-09-51. 0561	127-43-31. 8019	204.097	중부	285550. 621	266097. 653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39. 9862	127-43-29. 0932	176.160		185242. 48	266023. 73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도근점	5305	악양면 신흥리 977	35-09-49. 9536	127-43-31. 5787	202.089	중부	285516. 602	266092. 253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38. 8836	127-43-28. 8700	174.152		185208. 47	266018. 32				지역
도근점	5306	악양면 신흥리 532	35-09-49. 5989	127-43-32. 6722	205.316	중부	285505. 873	266120. 007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38. 5289	127-43-29. 9635	177.378		185197. 74	266046. 08				지역
도근점	5307	악양면 신흥리 977	35-09-48. 8358	127-43-32. 5621	201.235	중부	285482. 335	266117. 392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37. 7657	127-43-29. 8534	173.299		185174. 20	266043. 46				지역
도근점	5308	악양면 신흥리 60	35-09-46. 8789	127-43-32. 6515	196.420	중부	285422. 042	266120. 095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35. 8086	127-43-29. 9428	168.484		185113. 91	266046. 16				지역
도근점	5309	악양면 신흥리 977	35-09-47. 7251	127-43-31. 4186	191.859	중부	285447. 891	266088. 703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36. 6549	127-43-28. 7098	163.924		185139. 76	266014. 77				지역
도근점	5310	악양면 신흥리 204	35-09-48. 8538	127-43-29. 7692	196.456	중부	285482. 373	266046. 706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37. 7837	127-43-27. 0603	168.522		185174. 24	265972. 78				지역
도근점	5311	악양면 신흥리 469	35-09-50. 7173	127-43-29. 9042	195.896	중부	285539. 828	266049. 703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39. 6474	127-43-27. 1953	167.961		185231. 69	265975. 77				지역
도근점	5312	악양면 신흥리 463	35-09-50. 9359	127-43-28. 1893	194.964	중부	285546. 248	266006. 254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39. 8661	127-43-25. 4803	167.030		185238. 12	265932. 32				지역
도근점	5313	악양면 신흥리 456-2	35-09-50. 2093	127-43-27. 8374	194.578	중부	285523. 791	265997. 511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39. 1394	127-43-25. 1283	166.644		185215. 66	265923. 58				지역
도근점	5314	악양면 신흥리 455-1	35-09-49. 7433	127-43-27. 720	187.133	중부	285509. 408	265994. 646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38. 6733	127-43-25. 0109	159.220		185201. 27	265920. 71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도근점	5315	악양면 신흥리 216-1	35-09-49. 7729	127-43-23. 9415	181.939	중부	285509. 623	265899. 014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38. 7030	127-43-21. 2321	154.007		185201. 49	265825. 08				지역
도근점	5316	악양면 신흥리 221-8	35-09-50. 9543	127-43-21. 6777	176.220	중부	285545. 619	265841. 457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39. 8845	127-43-18. 9681	148.289		185237. 49	265767. 53				지역
도근점	5317	악양면 신흥리 산 97-1	35-09-34. 7769	127-43-26. 5722	190.791	중부	285047. 955	265968. 954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3. 7053	127-43-23. 8628	162.865		184739. 82	265895. 01				지역
도근점	5318	악양면 신흥리 산 97	35-09-34. 7494	127-43-28. 2731	195.897	중부	285047. 421	266012. 009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3. 6778	127-43-25. 5638	167.970		184739. 29	265938. 07				지역
도근점	5319	옥중면 양구리 466	35-09-44. 5248	127-52-44. 9484	152.151	중부	285462. 238	280098. 417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33. 4465	127-52-42. 2820	124.074		185153. 75	280024. 42				지역
도근점	5320	옥중면 양구리 596-1	35-09-49. 4150	127-52-55. 4653	143.415	중부	285615. 305	280363. 249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38. 3371	127-52-52. 7998	115.333		185306. 81	280289. 25				지역
도근점	5321	옥중면 정수리 산 7-1	35-09-41. 3501	127-52-59. 6264	149.129	중부	285367. 689	280470. 768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30. 2713	127-52-56. 9612	121.048		185059. 20	280396. 77				지역
도근점	5322	옥중면 양구리 642-2	35-09-40. 8536	127-52-55. 5007	154.863	중부	285351. 460	280366. 485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9. 7748	127-52-52. 8351	126.784		185042. 97	280292. 48				지역
도근점	5323	옥중면 양구리 610	35-09-39. 6819	127-52-51. 7278	156.236	중부	285314. 502	280271. 316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8. 6030	127-52-49. 0619	128.158		185006. 01	280197. 32				지역
도근점	5324	옥중면 양구리 649-2	35-09-37. 9907	127-52-47. 5432	158.171	중부	285261. 446	280165. 871	2019.01. 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6. 9116	127-52-44. 8769	130.095		184952. 96	280091. 87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도근점	5325	옥중면 정수리 915-11	35-09-35.1111	127-52-42.9844	160.171	중부	285171.678	280051.273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4.0317	127-52-40.3177	132.097		184863.19	279977.27				지역
도근점	5326	옥중면 양구리 668-4	35-09-34.7149	127-52-38.4555	170.661	중부	285158.459	279936.757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3.6355	127-52-35.7884	142.588		184849.97	279862.75				지역
도근점	5327	옥중면 정수리 618-4	35-09-34.2850	127-52-34.9861	170.106	중부	285144.433	279849.064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3.2055	127-52-32.3187	142.035		184835.95	279775.06				지역
도근점	5328	옥중면 정수리 795-2	35-09-33.9829	127-52-29.6142	175.164	중부	285133.927	279713.187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2.9034	127-52-26.9464	147.095		184825.44	279639.18				지역
도근점	5329	옥중면 정수리 795-2	35-09-33.1186	127-52-27.1495	174.933	중부	285106.742	279651.041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2.0390	127-52-24.4815	146.864		184798.26	279577.03				지역
도근점	5330	옥중면 정수리 654-2	35-09-25.4774	127-52-37.5550	169.903	중부	284873.566	279916.476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14.3970	127-52-34.8878	141.833		184565.08	279842.47				지역
도근점	5331	옥중면 정수리 210-9	35-09-32.6467	127-52-38.3832	157.129	중부	285094.702	279935.491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1.5671	127-52-35.7161	129.057		184786.21	279861.48				지역
도근점	5332	옥중면 정수리 253	35-09-31.2912	127-52-41.1776	155.260	중부	285053.550	280006.583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0.2114	127-52-38.5107	127.187		184745.06	279932.58				지역
도근점	5333	옥중면 정수리 589	35-09-32.5668	127-52-43.4847	152.619	중부	285093.378	280064.629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1.4871	127-52-40.8180	124.546		184784.89	279990.62				지역
도근점	5334	옥중면 정수리 588	35-09-33.1828	127-52-45.5146	149.779	중부	285112.818	280115.836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2.1032	127-52-42.8481	121.704		184804.33	280041.83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도근점	5335	옥중면 정수리 255	35-09-32.2642	127-52-48.420	148.076	중부	285085.156	280189.622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1.1845	127-52-45.7538	120.000		184776.67	280115.62				지역
도근점	5336	옥중면 정수리 574-5	35-09-34.9679	127-52-48.8647	151.396	중부	285168.582	280200.141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3.8885	127-52-46.1985	123.320		184860.09	280126.14				지역
도근점	5337	옥중면 정수리 574-5	35-09-35.2515	127-52-49.2931	151.353	중부	285177.418	280210.906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4.1721	127-52-46.6270	123.277		184868.93	280136.90				지역
도근점	5338	옥중면 정수리 575-3	35-09-36.2167	127-52-48.7414	147.876	중부	285207.040	280196.680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5.1374	127-52-46.0752	119.799		184898.55	280122.68				지역
도근점	5339	옥중면 정수리 571	35-09-36.0799	127-52-51.2840	145.499	중부	285203.394	280261.067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5.0006	127-52-48.6180	117.422		184894.90	280187.06				지역
도근점	5340	옥중면 정수리 915-22	35-09-34.1620	127-52-51.6742	144.523	중부	285144.373	280271.467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3.0825	127-52-49.0083	116.446		184835.88	280197.46				지역
도근점	5341	옥중면 정수리 558	35-09-35.3818	127-52-52.7781	148.846	중부	285182.216	280299.073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4.3024	127-52-50.1123	120.769		184873.72	280225.07				지역
도근점	5342	옥중면 정수리 548-3	35-09-36.8877	127-52-55.0649	142.271	중부	285229.139	280356.539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5.8085	127-52-52.3993	114.193		184920.65	280282.54				지역
도근점	5343	옥중면 정수리 537	35-09-36.9367	127-52-56.2809	141.839	중부	285230.920	280387.302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5.8575	127-52-53.6154	113.760		184922.43	280313.30				지역
도근점	5344	옥중면 정수리 935	35-09-35.3663	127-52-57.6530	141.626	중부	285182.832	280422.458	2019.01.14~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4.2869	127-52-54.9876	113.547		184874.34	280348.46				지역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 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측량 성과 보관 장소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도근점	5345	옥중면 정수리 196	35-09-37. 3236	127-53-07. 8950	134.137	중부	285245. 458	280681. 141	2019.01. 14 ~ 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6. 2444	127-53-05. 2305	106.055		184936. 96	280607. 14				지역
도근점	5346	옥중면 정수리 652	35-09-31. 8497	127-53-06. 9476	136.038	중부	285076. 544	280658. 664	2019.01. 14 ~ 15	표철	하동 군청 민원과	세계
			35-09-20. 7698	127-53-04. 2829	107.957		184768. 05	280584. 66				지역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9-91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최 은 *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010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하동군 악양면 봉대길	

장소

점용 : 고전면 신월리 1470(구) *인근: 고전면 신월리 959(답)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48m²

(또는

m³)

목적

농가주택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조성

기간

2019. 6. 11. ~ 2023. 6. 11.

점용·사용의 유형

진출입로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하 동 군 수 (인)

하 천 점 용 (변 경) 허 가 증

제2019-92호

주 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45-1, 3층		
성명(법인명)	(주)하동에너지 대표 홍준표		
생년월일			
하천명칭	주교천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금성면 궁항리 1351-15(제) 외 13필지 궁항리 1357-15, 1351-14, 1351-13, 1351-12, 1351-11, 1357-32, 1357-31, 1357-30, 1357-29, 1357-28, 1357-27, 1357-26, 1357-25, 1357-24		
점용면적	당초 1,217㎡, 변경 942㎡		
최초허가일	당초 2018년 08월 10일, 변경허가일 2019년 6월 12일		
점용기간	당초 2018. 7. 12 ~ 2022. 7. 25, 변경 2018. 7.12 ~ 2022. 7. 25		
허가조건	1. “불임참조”(허가조건) 준수할 것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6월 12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본 공작물의 설치는 귀 기관에서 직접 감독(또는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출한 도면 및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착수 시에는 공사착수신고서(예정공정표 첨부)를 제출해야 하며, 공사완료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공사 시행에 따른 하천의 오염이나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시행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하상 또는 고수부지 등에 적치하지 않아야 하며, 하천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우기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는 중지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기상특보시 즉시 철거 가능)
5. 공사시행 시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부착)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하며, 본 점용허가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는 하천시설물(제방 및 호안 등)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6. 점용허가 구간 공사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 보상 요구 등 모든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7. 하천점용 기간동안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하천점용으로 인한 민원발생등 공익을 위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쓰레기 및 오수 등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9.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10. 부득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점용 공사기간 및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및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9-93호

주 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45-1, 3층		
성명(법인명)	(주) 하동에너지 대표 홍준표		
법 인 번 호			
하 천 명 칭	주교천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경남 하동군 금성면 공항리 1350(구), 1358(구)		
점 용 면 적	240㎡ ※ 공항리1350(구) : 63㎡ / 공항리 1358(구) : 194㎡		
최 초 허 가 일	2019년 6월 12일		
점 용 기 간	2019. 6. ~ 2023. 6.		
허 가 조 건	붙임 참조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6월 12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제출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하고, 허가시설물의 다른 시설물이 추가설치 되거나 우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만료 1개월 전까지 하천점용 연장 허가신청 하여야 합니다.)

2. 본 점용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피허가자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피 허 가자 본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점용 및 공작물 설치로 편입되는 하천구역내의 사유 토지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또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4.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하천법에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협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않되** 며, 민원발생시 점용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접지역이 하천임을 감안하여 오폐수 유입방지를 위해 점 용지 유 지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등 국가 및 공익상의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당해 필지의 공작물(건물, 기타 축조물)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 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8. 제방 인접 공작물 설치 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하천법 95조에 의거 하천 점용 허가 취소 및 고발 조치 함을 알려드립니다.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연장 허가 공고

공고 제2019 - 94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하동군수		
	대표자 (성명)	윤상기	주소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소하천명		중서천		
공사(점용·사용)개요	위치	적량면 서리 1765-13		
	면적	25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기간	2019.6.13.~ (영구)		
	목적 및 사유	적량중서 체험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하천점용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준 공 검 사 서

신청인	성명	박 미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은행나무길							
1. 개간의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산100-1							
2. 승인의 면적		693m ² (진교면 술상리 산100-1)							
3. 준공의 면적		693m ²							
4. 개간의 용도		전작재배							
5. 토지 조서									
토지소재지									
		승인면적	준공후 토지 이용별 면적						
시군	면		리	지번	지목				
하동	진교	술상	산100-1	임	693m ²	693m ²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함.

2019. 6. 13.

하 동 군 수

하동군 고시 제2019 - 96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14.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세종태실로 575-89 외 12필지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 동 사 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산4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세종태실 로 575-89	2019 0614		2009 0702	세종태실지 명칭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402, 1396-1, 1397, 1400, 1401-1, 1401-3, 1408-2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 장로 118	2019 0614		2007 0618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 는 도로로 공공시설명 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94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245-22	2019 0614		2007 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 인 지리산 쌍계사 가는 길로 탐방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성을 반영 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616-8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554-29	2019 0614		2009 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616-8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554-27	2019 0614		2009 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848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회남재로 338-12	2019 0614		2007 0618	악양면 등촌리에서 청암 면 목계리로 넘어가는 회남재라는 고개이름에 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월평리 1021-1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당도길 41-15	2019 0614		2007 0618	당도라는 옛지명을 도로 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118-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모암길 29-11	2019 0614		2007 0618	모암이라는 자연마을이 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123-2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9	2019 0614		2007 0618	진교의 연원(淵源) 을 적용하여 민다리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리 374-6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울곡길 55	2019 0614		2007 0618	울곡이라는 자연마을이 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7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은행나무 길 42	2019 0614	2008 0402	큰 은행나무로 가는길 로 은행나무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대덕리 18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잔너리길 61-38	2019 0614	2009 0302	작은나루라는 뜻의 옛지 명에서 유래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중대리 46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55-26	2019 0614	2007 0618	중대리 아래쪽에 있다하 여 붙여진 자연마을이 름 반영

하동군 고시 제2019 - 98호

노인보호구역 지정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지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6. 17.

하 동 군 수

□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내용

시설명	위 치	노인보호구역 지정일	고시사유	비고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하동군 읍내리 일원 (L=345m)	2019. 6. 17.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신설	

※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담당(☎055-880-25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9-9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주)성현솔라팜 대표 김성호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장소

점용 :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1182(구) 인근 : 양보면 지례리 62-1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28㎡

(또는

㎡)

목적

토지의 점용(진출입로)

기간

2019. 6. 18. ~ 2023. 6. 18.

점용·사용의 유형

진출입로 목적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6월 18일

하 동 군 수 (인)

하동군 고시 제 2019 - 100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지적기준점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년 6 월 19 일

하 동 군 수

■ 지적도근점(복구)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소재지	원점	좌표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X	Y			
도근점	20	하동읍 화심리 66-6	중부	176082.07	266614.58	2003.03.25	각인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1	하동읍 화심리 78-4	중부	176102.27	266577.72	1996.10.02	PVC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22	하동읍 흥룡리 1725-1	중부	180283.13	263503.90	2003.03.25	맨홀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300	악양면 등촌리 산42-2	중부	189634.66	264810.44	2003.12.12	각인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152	양보면 장암리 480	중부	173570.32	275972.73	2004.03.04	각인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337	청암면 상이리 산228-2	중부	187653.01	271061.12	2002.11.28	PVC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387	청암면 목계리 925-1	중부	193621.82	266760.36	1997.11.20	표철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605	금성면 가덕리 192-2	중부	162891.57	274442.44	1994.09.13	각인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643	금성면 고포리 430-4	중부	163659.11	270520.39	2005.11.08	각인	하동군청 민원과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소재지	원점	좌표		설치일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X	Y				
도근점	1652	금성면 고포리 543-130	중부	163258.20	270759.21	2005.11.08	표철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1754	금성면 고포리 496	중부	163352.91	270948.05	2005.11.08	표철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343	북천면 화정리 1080	중 부	지역	182205.61	279118.29	2008.06.25	각인 못	하동군청 민원과
				세계	282514.09	279192.13	2017.06.22		
도근점	2371	진교면 술상리 290	중부	166487.04	283132.54	1990.07.02	각인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438	금성면 갈사리 1216	중부	162344.76	271748.51	2009.03.25	각인	하동군청 민원과	
도근점	2439	금성면 갈사리 1207-3	중부	162386.65	271936.05	2009.03.25	각인	하동군청 민원과	

하동군 고시 제 2019-101호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자)
		구역면적 (㎡)	총저수량 (㎥)	제당높이 (m)		
감나무골	경남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27 일원	100,000	11,100	9.0	개보수 공사 완료 (‘19. 03. 25.)	’16. 08. 16.
남당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165-2 일원	62,000	13,000	6.2	개보수 공사 완료 (‘19. 01. 29.)	’18. 01. 24.
못치골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3 일원	55,000	8,400	2.8	개보수 공사 완료 (‘19. 05. 03.)	’17. 05. 23.

2019년 6월 18일

하 동 군 수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연장 허가 공고

공고 제 2019-103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명)	최향0	주소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25
소하천명				
공사(점용·사용)개요	위치	경상남도 하동읍 두곡리 1610(구) *인접: 하동읍 두곡리 739(대)		
	면적	1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기간	2019.6.25.~2023.6.25.		
	목적 및 사유	진입 간판 설치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고시 제2019 - 104호

하동군 도로명 변경 및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하동군 도로명 변경 및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1. 고 시 일 : 2019. 6. 27.
2. 고시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붙임 조서 및 도면 참조
4. 도로명 변경 절차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가능하며,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 5년 동안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 공간정보담당부서(☎055-880-2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 변경 및 부여 조서 및 도면 1부. 끝.

붙임 도로명 변경 및 부여 조서

도로명 변경 조서												
행정 구역	위 계	현행 도로명	변경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도로 폭 (m)	기 초 간 격 (m)	기 초 번 호	중 심 선	유사도로명 동일 도로명	변경사유
				시작 지점	끝 지점							
하동군 옥종면	길	외골길	멧골길	법대리 397-6	법대리 161-4	1,114	4	20	1→112	위치도참조	해당없음	예부터 써오던 마을이름을 반영한 멧골길로 변경



도로명 부여 조서

행정구 역	위 계	도로명	기점	중점	길 이 (m)	폭 (m)	기초간 격 (m)	기초변 호	중심선	부여사유	비 고
하동군 하동읍	길	너뱅이길	비파 리 295- 5	비파 리 438 -4	1,1 23	8	20	1→114	위치도 참조	도로가 위치한 지명 사용	



하동군 공고 제2019 - 628호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20 이하로 구성
 - 당연직 위원 외 위촉위원은 군수가 위촉
 - 협의회 기능 규정함(안 5조)

○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월 일까지 하동군(참조 : 농산물유통과, 전화 880-6553, FAX 880-6559, e-mail:h8410211@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수산물, 식품의 수출촉진 시책 자문을 위해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수산물 수출단체 대표 및 수출 농가
2. 농식품 가공업체 대표
3. 군단위 금융기관 대표 및 수출농협 대표
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 관련 전문가
5. 경남무역 수출 관련 전문가
6. 수출대행업체 대표

③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2.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여 협의회 운영을 저해 하였을 경우
3.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 ① 협의회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수산물 수출 촉진 시책
2. 농수산물 수출 촉진 계획 수립
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반기, 하반기에 1회씩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시작 5일전까지 회의의 안건 및 내용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시책개발이나 건의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개발한 시책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 2019 - 646호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호주제, 손해배상, 과태료, 일본식 한자어 내용 정비 및 자치법규 네거티브화를 위한 규정 신설
3. 주요 내용 :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25개 조례의 일괄 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하동군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담당(전화 055-880-2973, FAX 055-880-2019, e-mail H9106031@korea.kr)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 중 “진다”를 “질 수 있다”로 한다.

제2조(「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 중 “모든 책임은 그 자료의 게시자에게 있으며”를 “그 자료의 게시자는 책임을 질 수 있으며”로 한다.

제3조(「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4조제3항 중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로, 제6조제2항 중 “모든 책임을 진다”를 “책임을 질 수 있다”로 한다.

제4조(「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개정)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8조제2항 중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제4호를 “4. 그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중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중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책임을 지지 아니 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를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다”로 한다.

제9조(「하동군 계획 조례」의 개정) 하동군 계획 조례 제50조를 “제50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의 개정)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를 “1.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1조(「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중 “책임을 진다”를 “책임을 질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하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의 개정) 하동군 여름

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하동군 지하수 조례」의 개정) 하동군 지하수 조례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4조(「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1. “지역건설산업”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15조(「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7조(「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제49조제1항 전단 중 “납부금”을 “납부금(과태료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중 “요금·가산금·수수료·과태료·그 밖에 모든 징수금”을 “요금·가산금·수수료·그 밖에 모든 징수금(과태료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8조(「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제3호를 “3. 그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같이 신

설한다.

제19조(「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3조를 “제13조(과태료)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20조(「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중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에 제4호를 “4. 그밖에 군수가 이자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업 사업”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제6호를 “6. 그밖에 군수가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3항 중 “모든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를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하

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25조(「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의 개정)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9조에 제4호를 “4. 그밖에 군수가 귀농인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변상책임) ① (생략)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및 인솔자가 책임을 진다.	제14조(변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질 수 있다.</u>

「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개인정보 보호) ①·② (생략) ③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관련기관·단체나 개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u>모든 책임은 그 자료의 게시자에게 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u>	제17조(개인정보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그 자료의 게시자는 책임을 질 수 있으며,</u> ----- ----- -----.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② (생략) ③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인은 <u>책임을 지지 않는다.</u>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u>

<p>제6조(대행점 지정 및 관리) ① (생략)</p> <p>② 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수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u>모든 책임을 진다.</u></p> <p>③·④ (생략)</p>	<p>제6조(대행점 지정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책임을 질 수 있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	--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u>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p>	<p>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다.</u></p>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1조(홍보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11조(홍보지원 등)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u></p>

정하는 사항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손해배상) ①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 ----- ----- <u>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손해배상) ①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 ----- ----- <u>책임을 지지 아니 할 수 있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변상책임) ① (생 략)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u>그 책임이 사용자</u> 에게 있다.	제13조(변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사</u> <u>용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다.</u>

「하동군 계획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구조로써 한식 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 8. (생략)	제2조(정의) ----- -----. 1.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 8. (현행과 같음)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민·형사상책임) 수탁자는 수탁재산 및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4조(민·형사상책임) ----- ----- ----- ----- - 책임을 질 수 있다.

「하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하동군 지하수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제 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 1. “지역건설산업”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과태료 부과와 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처분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와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과태료) <u>군수는 부당한 수단으로서 부담금 등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u>	<삭 제>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u>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u> ② (생략)	제49조(이의신청) ① ----- ---- <u>납부금(과태료를 제외한다)</u> ----- ----- ----- ----- <후단 삭제>
제50조(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제50조(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 ② (현행과 같음)

<p>조례에 따른 <u>요금·가산금·수수료·과태료·그 밖에 모든 징수금</u>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p>----- <u>요금·가산금·수수료·그 밖에 모든 징수금(과태료를 제외한다)</u>----- ----- ----- -----</p>
--	--

「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① (생략)</p> <p>② 군수는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u><신 설></u></p>	<p>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그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p>	<p>제13조(과태료)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법」에 따른다.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하동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1. ~ 3. (생략) <신설>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그밖에 군수가 이자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업 사업</u>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 ① (생략) ② 제1항의 임대차 계약의 취소 또는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이에 대하여 <u>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제12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다.</u>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출농어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	제6조(수출농어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

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②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6. 그밖에 군수가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 ② (생 략) ③ 운영주체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u>모든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u> ④ (생 략)	제20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u> ④ (현행과 같음)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농촌총각"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남자 농업인으로서 <u>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인 자를 말한</u>	제2조(용어의 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 ----- <u>「가족관계의 등록</u>

<p>다.</p> <p>3. (생 략)</p>	<p>등에 관한 법률」상 -----.</p> <p>3. (현행과 같음)</p>
---------------------------	---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교육지원) 군수는 교육을 통해 귀농인들이 효과적으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신 설></p>	<p>제9조(교육지원) -----</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그밖에 군수가 귀농인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p>

하동군 공고 제2019 - 647호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2. 제안 이유 : 호주제, 손해배상, 과태료, 일본식 한자어 내용 정비 및 자치법규 네거티브화를 위한 규정 신설
3. 주요 내용 : 하동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의 일괄 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하동군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담당(전화 055-880-2973, FAX 055-880-2019, e-mail H9106031@korea.kr)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
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자치법규 준비를 위한 하동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하동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하동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 중 “본적이”를 “등록기준지가”로 한다.

제2조(「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중 “진다”를 “질 수 있다”로 한다.

제3조(「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제 13호를 “13. 그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와 같이 신설한다.

제4조(「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의 개정)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제3호 중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동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상자의 자격) 군민상 수상후 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하동군 태생이거나 <u>본적이</u> 하동군인 자 2. 3. (생 략)	제3조(수상자의 자격) ----- ----- -----. 1. ----- <u>등록기준</u> <u>지가</u> ----- 2. 3. (현행과 같음)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질 수 있다.</u>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자대상업체)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용자대상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활성에 기여도가 크고 국가시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업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p> <p>1. ~ 12. (생략)</p> <p><u><신 설></u></p> <p>② (생략)</p>	<p>제2조(용자대상업체) ① -----</p> <p>-----</p> <p>-----</p> <p>-----</p> <p>-----</p> <p>-----</p> <p>-----</p> <p>1. ~ 12. (현행과 같음)</p> <p><u>13. 그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u></p> <p>② (현행과 같음)</p>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u>계리(計理)</u>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p> <p>4. ~ 6. (생략)</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 ----- ----- ----- <u>회계처</u> <u>리</u> ----- ----- -----.</p> <p>4. ~ 6. (현행과 같음)</p>

하동군 공고 제2019 - 653호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 월 4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
3. 주요 내용
 - 용어 변경
 - 제7조 “장애인 등급 3급 이상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으로 한다
 -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순위 구분	1 순위	2 순위	3순위
20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 조제항 별표1의 장애의 정도 가 심한 장애인 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 조제항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으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자	비과세 대상자

4. 의견 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하동군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전화055-880-2217, FAX055-880-2349, h8004121@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 중 “장애인 등급 3급 이상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구분 \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20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비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다목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라목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70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비과세 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외의 자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

- ※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2.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등급 3급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 또는 구두로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7조(계약자의 의무) ----- ----- -----. -----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의 ----- ----- ----- ----- ----- -----.</p>

하동군 공고 제2019 - 655호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6 월 4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
3. 주요 내용
 - 용어변경
 - “1급, 2급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 “중증장애인”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하동군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전화 055-880-2217, FAX 055-880-2349, h8004121@korea.kr) 에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급, 2급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용대상) ① 거주시설의 이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1급, 2급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수급자가 아닌 중증장애인의 입소는 정원 30 퍼센트 범위 안으로 한다.	제8조(이용대상) ① ----- ----- ----- 장애의 정 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 한 장애인-----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19 - 656호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6 월 4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
 - 노인복지법 경로연금 관련 조항 삭제로 인한 용어 변경
3. 주요 내용
 - 용어 변경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연금” 을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으로 한다.
 - 휠체어 이용 요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면제 대상자 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하동군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전화 055-880-2217, FAX 055-880-2349, h8004121@korea.kr) 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연금”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면제 대상자(제9조제3호 관련)

장애종류	상 태	비고
지체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뇌병변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청각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언어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적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폐성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생 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연금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자	제9조(이용료의 면제) ----- ----- -----. 1. (현행과 같음)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

하동군 공고 제2019 - 667호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주차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조의2 제2항 본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생략)</p> <p>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차요금을 50% 경감한다.</p>	<p>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은 ----- ----- -----.</p>

하동군 공고 제2019 - 701호

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2. 개정 이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업종 추가로 시설기준 규제 완화 및 영업을 하려는 자의 업종 선택 확대
3. 주요 내용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정의 및 시설기준 신설
(안 제2조제2호, 제3조제3호, 제4조제4호, 제5조, 제7조제1항,)
 - 조건부 영업신고 시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 영업의 폐업신고 간주 규정 신설 (안 제7조제2항)
 - 식품 영업 신고서 구비서류 정비(안 별지 제2호 서식)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하동군(보건소 ☎880-2352, FAX 880-6620)에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일
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3조제3호가목, 다목 및 라목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각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4

제5조 본문 중 “식품접객업”을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식품소분·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식품소분·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한시적 조건부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제1호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물질의 발생시 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내수성·내부식성이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제4호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및 식품취급시설 등

-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 나.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된 건축물로 분리 또는 구획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다. 건물의 구조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자연환기 등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
- 라.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내수성·내부식성이 있는 식수 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5.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여야 하나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HP :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		
	영업기간		영업장면적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하동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 하

구비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 6)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업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7) 계약서(규칙 제5조 관련)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의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위 기간 이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 <u><신 설></u></p> <p>2. ~ 7.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u></p> <p>3. ~ 8. (현행 제2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p>
<p>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p> <p>1. · 2. (생 략)</p> <p>3. <u>식품접객업</u></p> <p>가.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 하는 지역축제에서 <u>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u></p> <p>나. (생 략)</p> <p>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u>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u></p> <p>라. 건설공사현장에서 <u>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u></p>	<p>제3조(적용대상)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u></p> <p>가. ----- ----- <u>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제과점영업-----</u></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 <u>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제과점영업-----</u></p> <p>라. ----- <u>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제과점영업-----</u></p>

③ (생 략)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19 - 721호

하동군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코자 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 공공시설 4개소(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및 청학동공설주차장, 공설봉안당, 구재봉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로페이 이용자 대상 사용료 감면 특별 조례 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하동군(참조 : 경제전략과, 전화 055-880-2805, FAX 055-880-2199, e-mail mklee4353@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관련법령, 관련판례 및 해석례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하동군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으로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하동군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로페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호에 따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간편결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용료등”이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용료등을 징수하는 별표의 군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군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등을 결제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등 경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등의 경감) 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로페이로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사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다만, 사용료등이 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가 받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 표]

하동군 공공시설(제3조 관련)

시설명	적용범위	사용료 등 근거조항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이용료 징수 등) 및 제9조(이용료 감면)
	헬스장	
공영주차장, 청학동 공설주차장	주차요금	「하동군 주차장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및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봉안당	사용료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사용료 등)
자연휴양림	입장료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5조(시설사용료)
	숙박시설 사용료	
	산림레포츠시설 사용 료	
	목재문화체험장 사용 료	
	모노레일·세미나실 사용료	

관 계 법 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8.11.19. 발의, 소관위 계류 중)

제9조의2(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지방세징수법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

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및 해석례 등

□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창녕군수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면제하려는 경우,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면제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제7호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등 관련)

[의견18-0132, 2018. 7. 6., 경상남도]

【질의요지】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창녕군수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면제하려는 경우,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면제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제7호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이하 “창녕군조례”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관광 시설물’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관광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 별표 1에서는 “산토끼노래동산”을 같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시설물에 입장하여 전시품과 시설물을 관람·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창녕군 조례에 따라 창녕군수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입장료)를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면제하려는 경우, 창녕군조례 제10조에 면제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창녕군조례 제10조제7호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공공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어서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참조),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역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9. 22. 의견 16-0245 제시사례 참조).

창녕군 조례 제10조에서는 시설물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7호에서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녕군에서 창녕군조례 제10조제7호의 규정을 둔 취지는, 조례 입안 단계에서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후에 정책적으로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창녕군수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창녕군조례 제10조제7호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는 같은 조례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사유에 비하여 과도하게 특혜를 부여하는 등 합리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되는 해석상 한계 또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이러한 한계 범위에 있는지 여부는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과 같이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동일한 면제 사유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라면, 현행 창녕군조례 제10조제7호를 근거로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보다는 같은 조에 호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사용료 면제 대상 및 면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창녕군조례 제10조제7호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 창녕군 조례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같은 조 제7호 사이의 체계정합성을 제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인바, 이 점을 향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시는 문경시의 행정재산인 문경 에코랄라를 ‘직영’하는 경우 조례로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를 확정 금액이 아닌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 제136조 등 관련)

[의견18-0052, 2018. 3. 6., 경상북도]

【질의요지】

가. 문경시는 문경시의 행정재산인 문경 에코랄라를 ‘직영’하는 경우 조례로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를 확정 금액이 아닌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문경시의 행정재산인 문경 에코랄라를 ‘관리위탁’ 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문경시가 조례로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문경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하“문경시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1호에서는 “문경 에코랄라”란 문경시 가은읍 황능길 114일원의 녹색문화체험관, 석탄박물관, 체험시설, 세트장, 야외놀이기구,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복합 생태 영상 테마파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이용료”란 문경 에코랄라의 전시물 및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14조제1항에서는 이용료는 이용대상에 따라 차등을 두며 5,000원에서 20,000원 이내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문경시조례안에서 문경시의 행정재산인 문경 에코랄라의 이용료를 확정 금액이 아닌, 최고액과 최저액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는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고, 공물에 대한 사용 관계로서 공법적 관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직접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이용료 부과 금액 및 시기와 같이 이용료의 징수와 관계된 사항은 조례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조례에서 이용료의 상한이나 부과의 기준 등과 같은 이용료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

정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도 이용료 부과 금액 및 시기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6.29. 의견제시 11-0110,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137쪽 참조)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 제27조제8항제5호에서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이용료 징수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장이 문경 에코랄라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문경 에코랄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로 이용료 부과 및 징수분만 아니라 행정재산의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3.23. 법령해석례 17-0068 참조)

□ 여주시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주민에게 받는 공연 관람료를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의견14-0151, 2014. 8. 1., 경기도]

【질의요지】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의 일부 시설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들에게 공연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공연관람료를 감면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의 일부 시설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들에게 공연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공연관람료를 감면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이하 “여주시 조례”라 함)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명성황후 유적지의 일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과는 별도로,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여주시 조례안”이라 함) 제5조제4항에서 명성황후 유적지의 일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공연을 하면서 공연관람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 행사의 내용·관람료·관람예정인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연관람료를 감면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여주시 조례안 제5조제4항 전단의 허가에 대해 살펴보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공연관람료를 징수하려는 때에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단순히 사용하려고 할 때에 여주시 조례 제9조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면서 행사의 내용, 관람료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여주시 조례 제9조에 따른 허가와는 다른 새로운 허가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사용자가 공연관람료를 징수하려는 때에 허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려면 그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는 아니므로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

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연법」 등 공연 관련 법령이나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서는 공공시설 사용자가 공연관람료를 징수하려고 할 때에 행사의 내용, 관람료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공연관람료 등에 대한 허가에 대해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연관람료의 감면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연관람료 등에 대한 허가를 조례에서 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공연관람료 감면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여주시 조례안 제5조에 따른 공연관람료 등에 대한 허가가 여주시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때에 제출하는 고려사항에 불과할지라도,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연 관람료의 결정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의 사용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시장과 공공시설 사용자와의 관계가 아닌 사용자와 공연 관람객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서 예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로 규율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사용자가 징수하는 공연 관람료를 감면하는 사항은 사용자가 적정한 공연 관람료를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연 관련 법령이나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한 법령에서는 사용자의 공연 관람료의 징수나 감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의 일부 시설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들에게 공연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공연관람료를 감면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동군 공고 제2019 - 581호

도로명 변경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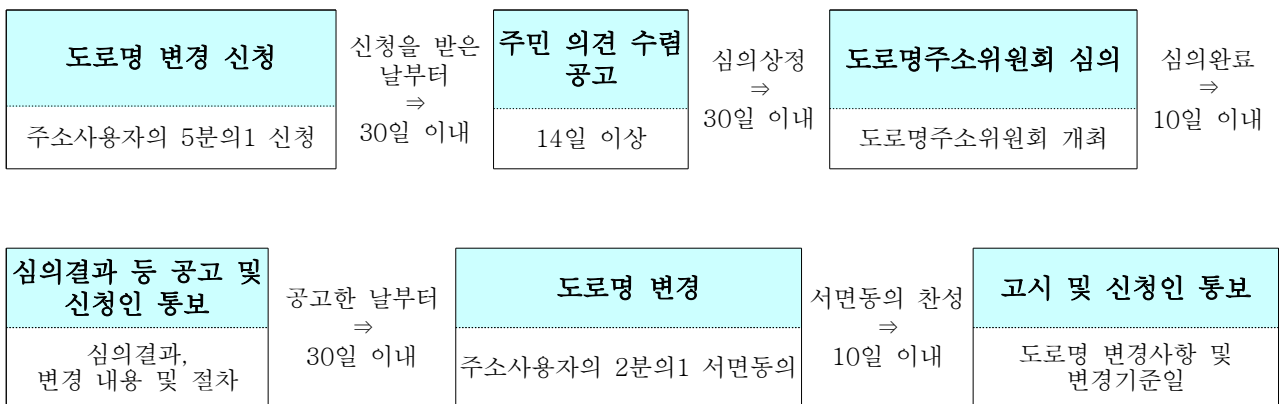
하 동 군 수

- 1. 공고 및 의견수렴 기간 : 2019. 5. 15.(수) ~ 2019. 5. 29.(수)
- 2. 도로명변경조서 및 현황도 : 별첨
- 3. 의견제출 : 도로명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기관·단체는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도로명 변경(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처(방문, 우편, 팩스 제출 가능)

-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 전화 : 055-880-2124 (FAX : 055-880-2078)

4. 도로명 변경 절차



-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 공간정보담당부서(☎880-2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명 변경 조서

<변경 전>

행정구역	위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도로폭 (m)	기초간격 (m)	기초번호	중심선	유사 도로명 동일 도로명	부여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하동군 옥종면	길	뒤편길 (주도로)	옥종면 법대리 397-6	옥종면 법대리 161-4	1,114	4	20	1→112	위치도참조	해당없음	법대리의 서쪽 산기슭에 있어 산자와 곡자를 딴 이름을 붙여 뒤편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변경 후>

행정구역	위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도로폭 (m)	기초간격 (m)	기초번호	중심선	유사 도로명 동일 도로명	변경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하동군 옥종면	길	뒤편길 (주도로)	옥종면 법대리 397-6	옥종면 법대리 161-4	1,114	4	20	1→112	위치도참조	해당없음	예부터 써오던 자연마을 이름은 '뒤편'이 아닌 '뒤편'이기 때문에 뒤편길로 변경

【붙임 2】 위치도



도로명 변경(안) 주민의견서

성명 (단체명)		연락처	
주 소			

주민의견 사항

도로명 변경 의견	사 유

위와 같이 도로명 변경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

환 지 계 획 공 고

하동군 공고 제2019 - 583호

2016년도 시행한 공항지구 받기반정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6일

사업시행자 : 하 동 군 수

1. 사업지구명 : 공항지구 받기반정비사업
2. 사업 구역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일원
3. 종전토지구역면적 : 소유자 : 46명, 면적 : 62,718㎡
4. 환 지 면 적 : 소유자 : 29명, 면적 : 62,639.6㎡
5. 환 지 청 산 금 : 59,032,660원
6. 공 고 기 간 : 2019. 5. 16. ~ 2019. 5. 29.(14일간)
7. 환 지 내 용 : 하동군 건설교통과 및 읍사무소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610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7급상당)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하동군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22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수목보호전문가	지방일반임기제 7급상당(지방녹지주사보)	1명	2년	산림녹지과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수목보호 전문가	- 10리 벚꽃길 보호사업 총괄 - 관내 가로수 수목 등 산림보호 관련 업무 수행

3. 근거 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자격요건(필수)
수목보호 전문가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조경학, 산림자원학, 산림환경자원학
	우 대 조 건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 력이 있는 사람 2.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헌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직무분야 : 식물보호, 조경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1항 4호)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수목 보호 (3년이상경력)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5. 보수 수준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7급(상당)	60,139천원	42,713천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19. 5. 22(수)	'19. 5. 22 ~ '19. 6. 3	서류전형	-	'19. 6. 5.
		면접시험	'19. 6. 7.	'19. 6. 11.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19. 05. 22 ~ 06. 03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계(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 등기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7급 7,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 (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7급 상당 - 7,000원
-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산림녹지과(☎ 055-880-2493)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직급	비 고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8.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하동군수 귀하

※		()	사 진
	()	()	
			⑩
		-	
	(-)		하동군 수입증지 6,7급(7,000원) 8,9급(5,000원)

※응시번호		응 시 표 (지방일반임기제 임용시험)	
응시직급	지방녹지주사보 (일반임기제)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 (3cm×4cm)⑩
주민등록 번호		-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2019년 월 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⑩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하동군 행정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응시원서는 향후 기능시험 및 면접시험에 사용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
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붙임 2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3. 우대사항				
경 력	근무기관	채직기간	주요 추진 사항	직위
자 격 증	자격증명	취득일	검정기관	비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3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 시 활용됨

< 붙임 5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문

하동군은 지방임기제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정보>

- 사진 및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이메일,휴대폰번호,병역사항 등)
- 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선택정보>

- 자기소개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 ※ 상기 선택정보를 미작성하더라도 응시는 가능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류전형·면접시험 시 직무수행 적합성 등의 판단을 위해 활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 기간 전·후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해당란에 체크 ✓ 표시

2019. . .

작성자 성명 : (서명)

하동군 공고 제2019 - 629호

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하 동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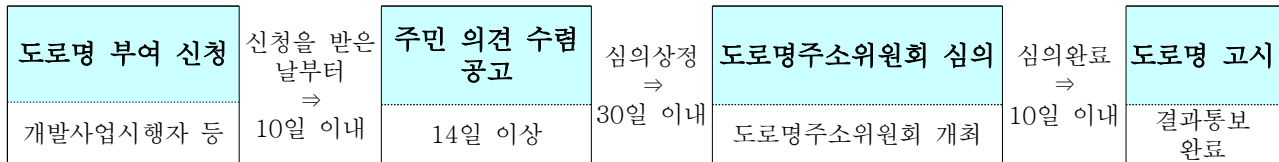
- 1. 공고 및 의견수렴 기간 : 2019. 5. 24.(금) ~ 2019. 6. 7.(금)
- 2. 대 상 : 붙임조서 참조
- 3. 의견제출

붙임 도로명 부여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인 공고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처(방문, 우편, 팩스 제출 가능)

-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 전화 : 055-880-2124 (FAX : 055-880-2078)

4. 도로명 결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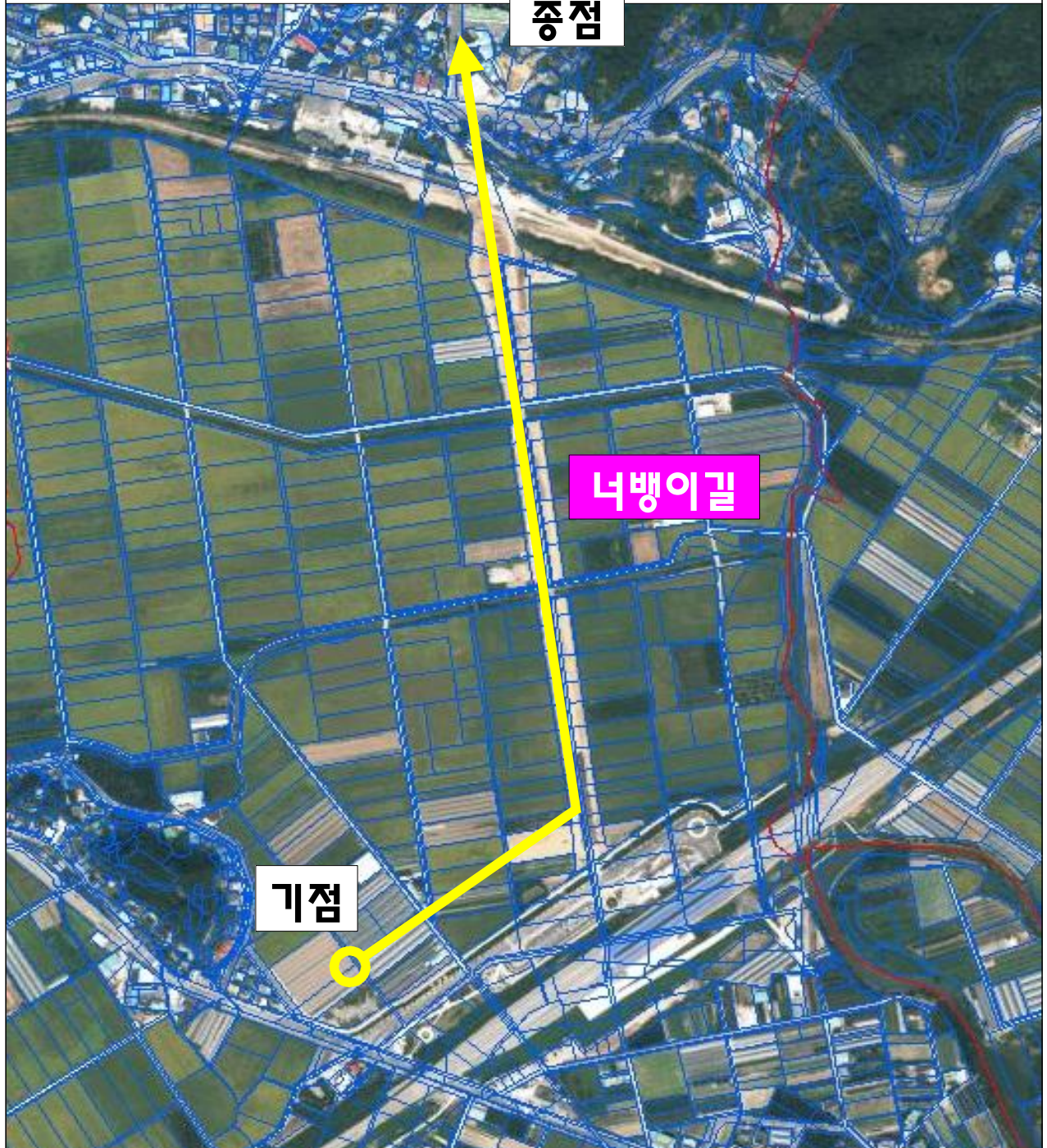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 공간정보담당부서(☎880-2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 부여 조서 및 현황도

도로명 부여 조서								
기점	종점	연장 (m)	폭 (m)	기초간격 (m)	도로위계	예비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하동읍 비과리 295-5	하동읍 비과리 438-4	1,123	12	20	길	너뱅이길	도로가 위치한 지명 사용	

현황도(너뱅이길)



도로명 부여(안) 주민의견서

성명 (단체명)		연락처	
주 소			

주민의견 사항

도로명 부여 의견	사 유

위와 같이 도로명 부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19-631호

제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 공고

경상남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복지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성 강화와 사람중심 경남복지 구현에 함께 할 능력 있고 덕망 있는 선임직 이사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5월 24일

재)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분야 및 인원

직 위	인 원	임 기	역 할
선임직 이사	2명 이내	2년(비상근) * 1회 한해 연장가능	- 재단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 자격요건(기준: 공고일 기준)

❖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1.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이 가능한 자
- 3. 경상남도의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공헌이 있는 자

○ 결격사유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불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中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中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中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주요 업무내용

이 사 의 임 무

1.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2.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

1.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수탁 또는 대행
2. 각종 사회서비스의 통합 제공 및 표준운영 모델 개발
3. 민간 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지원 사업
4.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 협력지원사업
5.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
6.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개발
7.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교육 컨설팅
8. 도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경상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교부	원 서 접 수 처	접수기간	접수방법
경상남도홈페이지 (www.gyeongnam.go.kr)	(51154) 경상남도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본관 지하1층 (재)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임시사무실)	'19. 5. 24. ~ 5. 31.	방문, 우편, 이메일

- 공고기간 : 2019. 5. 24. ~ 2019. 5. 31. (7일간)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4」 및 「(재)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 신속한 채용을 위해 모집기간 7일로 단축 가능
 - *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인사·조직 지침」에 의거 공고 및 접수기간 산정
- 접수기간 : 2019. 5. 24. ~ 2019. 5. 31. (6일간), 09:00~18:00
 - * 방문접수 시 토·일·평일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접수방법 : 방문·등기우편·이메일(kelsen1004@korea.kr)
 -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서류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를 접수마감 전에 전화로 반드시 확인 요망
 - * 우편봉투겉면에 “사회서비스원 임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문 의 처 : (재)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 055-211-7783~4)



4. 응시자 제출서류

- 제출목록표
- 응시원서 (사진 2매 부착)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업적목록 및 연구실적(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유효 : 공고개시일 기준 1년 이내 발급서류)

- 기타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 필요자료(해당자에 한함)



5. 공개모집 조건

- 보수 : 무보수 비상근
단, 회의참석 시 회의 참석수당 등 실비지급
- 임기 : 임명일로부터 2년 (1회한 연임가능)



6. 심사방법 및 선정 발표

- 서류심사
(접수결과 응모자 수가 공개모집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예정)
- 절차 :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재단이사회 의결, 보건복지부 승인, 경상남도지사 임명
- 최종 선정자 발표 : 경상남도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처리(채용확정이후, 반환청구 시 본인 확인 후 반환 (확정자는 제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인정합니다.
- 서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055-211-77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양식 : 제출목록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업적 목록 및 연구실적,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번호	성명	공모분야
		이사

제출서류 목록	제출여부 체크
1. 응시원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2. 이력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3. 자기소개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4. 업적목록 및 연구실적 (해당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5.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6.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7. 기타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 필요자료(해당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임원(이사)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공모분야	이사	사 진 ¹ (3×4)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연령: 세)	
	한자			
현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자 택		
	E-mail			

응 시 표

※ 응시번호		공모분야	이사	사 진 ² (3×4) * 1과 동일한 사진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2019 년 월 일 재)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당일은 응시표(우편, 메일접수자는 당일교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 장소로 등록하셔야합니다.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잘못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 ① 공모분야 : 이사
- ② 전 화 :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 ③ ※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첨부서류〉

- (1) 제출목록표
- (2) 응시원서 (사진 2매 부착)
- (3) 이력서
- (4) 자기소개서 (경력 및 업적중심으로 A4용지 5매 이내)
- (5) 업적목록 및 연구실적(해당자에 한함)
- (6)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 (7)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유효 : 공고개시일 기준 1년 이내 발급서류)
- (8) 기타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 필요자료(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응시 번호		성 명		공모분야	이사
-----------	--	-----	--	------	----

가. 교육배경

학력 및 전공	학교명	학과(전공)	입학년월~졸업년월	학위 종류
	00학교		0000.00 ~ 0000.00	학사

나. 기술 및 자격

자격증	종 류	등록번호	자격 검정기관
	※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만 기재		
어학	종 류	점수 또는 수준	자격 검정기관
	※ 유효기간 내 대상만 기재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다. 학위논문

학위명	학교명	논문제목	취득년월일	비 고
	00대학교			
	00대학원			

라. 연구실적

연번	구 분	논문제목	발표일자	발표기관	발표자	비 고

마. 포상실적

포상일	포상훈격	유공내용	비고
	00장관		

《뒷면》

바. 실무경력				
연번	근무기관	근무기간 (근무연월일)	직위(급)	담당업무
	□□법인 00과	'00.00.00. ~ '00.00.00. (0년 0월 0일)	사원	○○업무
			00팀장	
<p>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20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 명 : (인)</p>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 가. 공통사항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공모분야 : 해당하는 분야에 체크 기재

나. 작성요령

- ① 공모분야와 관련된 경력을 모두 기재, ※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 경력증명서는 관련기관·회사 등의 근무부서 및 직위(급),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 ② 근무기관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 ③ 근무연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⑤ 직위(급) 기재 시 반드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공식직함을 기재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공모분야 :

성 명 :

생년월일 :

.....
.....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A4용지 5매 이내,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사회복지·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문적 지식· 활동경력 및
관심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지역사회 공헌도, 리더쉽, 윤리관 등

2019. . .

작성자 ○ ○ ○ (서명)

재)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업적목록 및 연구실적

□ 업적 목록

사업명	주관기관	수행자 (책임, 공동)	수 행 연월일	내 용 요 지

- 주) 1. 위 양식에 따라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2. 자료제출 요구 시 관련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연구실적 목록

제 목	게재서 (출판사, 학회지)	연구자 (책임, 공동)	발 표 연월일	내 용 요 지

- 주) 1. 위 양식에 따라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2. 최근 5년 이내 연구실적만 작성
 3. 자료제출 요구 시 관련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제)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임원(대표, 이사, 감사) 공개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임원 공개모집 심사를 위한 자격·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회 포함)

2.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메일,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모집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등

3.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19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2019-635호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19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차량소유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28.

하 동 군 수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9. 6. 3.(월) 09:00 ~ 6. 14.(금) 18:00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조회(<http://emissiongrade.mecar.or.kr/>)
- 콜센터(1833-7435) 안내

○ 사업물량 : 45,940천원, 30대분(예산범위내)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가능

○ 신청방법 : 군청 환경보호과

- 보조금 지원대상 조건 충족 시 접수 우선순위로 선정

□ 조기폐차 지원 기준

○ 조기폐차 신청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하동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 2대 이상 차량 소유주(법인 포함) : 1대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및 산정 기준

1.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지원율에 따라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
 -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 신차구입비 추가지원
 -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휘발유,가스차) 구매시 구매 지원금 200% 추가 지원
 -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차량(19.1.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
3.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4.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지원율 10%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5.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6. 생계형 차량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신청 전 1개월 이내 발급)를 첨부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수급자인 경우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 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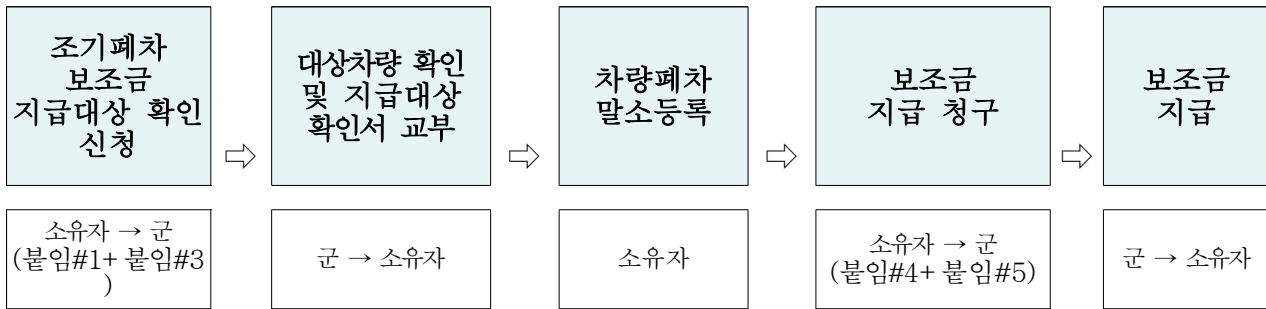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 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5,500cc 초과 7,500cc 이하		
	7,500cc 초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

○ 조기폐차 신청시 구비서류

- 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②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③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 ④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⑤ 2019년 5월 1일 이후 실시한 관능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1부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단, 대리 접수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제출
- ⑦ 차량 사진 4매 (앞뒤·좌우)

【유의사항】

조기폐차제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보조금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 (선정 후 보조금 청구시)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② 자동차말소증빙서류(말소증명서)
- ③ 소유자 통장 사본
-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하동군 발행분)

【유의사항】 보조금 신청은 폐차 완료 후 상기서류 구비하여 2019. 6. 25.(화)까지

환경보호과 방문 접수

(기간 이후 폐차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총중량 3.5톤 이상만 해당)

-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6]
-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
- ③ 소유자 통장 사본
-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하동군 발행분)차량

【유의사항】 보조금 신청은 군에서 발급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기간이후 제출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기타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및 「‘19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문의

- 전화 : 하동군 환경보호과 조기폐차 담당자(☎055-880-2564)

[붙임2]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_____는(은) 수임자_____에게
 차량번호_____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1. 인감(법인)증명서 1부.

2. 수임자 신분증 사본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법인)도장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 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 하동군수 귀중

[붙임4]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 동 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식()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 가액	기본	원 (W)	
		추가	원 (W)	
<p>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수 (인)</p>				
<p>※ 참고사항</p> <p>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6월 25일(화)까지 폐차 완료하여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p> <p>2.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p>				

「 」

저수지 명	위 치	규 모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자)
		구역면적 (㎡)	총저수량 (㎥)	제당높이 (m)		
감나 무골	경남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27 일원	100,000	11,100	9.0	개보수 공사 완료 ('19. 03. 25.)	'16. 08. 16.
남당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165-2 일 원	62,000	13,000	6.2	개보수 공사 완료 ('19. 01. 29.)	'18. 01. 24.
못치골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3 일원	55,000	8,400	2.8	개보수 공사 완료 ('19. 05. 03.)	'17. 05. 23.

2019년 6월 18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9 - 625호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가 격 기 준 일 : 2019. 01. 01
2. 결 정 · 공 시 일 : 2019. 05. 31
3. 결정·공시 필지수 : 284,021필지
4. 결정·공시내용 : 토지지번별 m²당 가격
5. 이의신청 및 처리
 - 기 간 : 2019. 05. 31 ~ 07. 01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된 필지는 이의신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
6. 기타사항
 - 기타 하동군 홈페이지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하동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년 5 월 31 일

하 동 군 수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m ²	의견가격 원/m ²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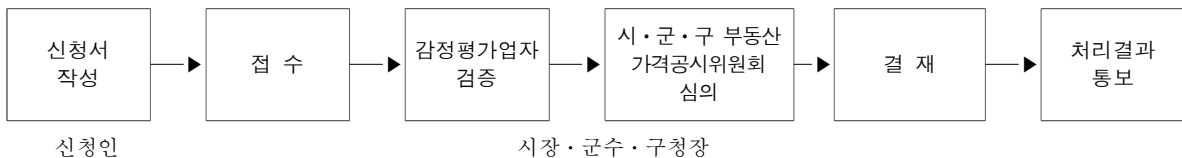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8]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minwon.go.kr).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Appellant's Opinion	
	KRW/m ²			KRW/m ²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1) in Article 11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 as above.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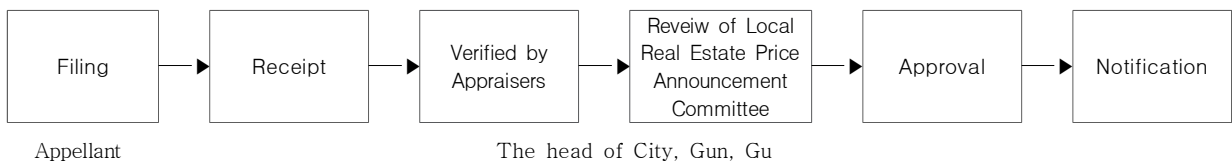
Appellant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	---	------------

Proceedings



하동군 공고 제2019 - 626호

과년도분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년도분의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가격기준일 : 2018. 1. 1
2. 정정지가 결정·공시일 : 2019년 5월 31일
3. 정정지가 결정·공시 필지수 : 1필지

정정 년도	토지소재지	지목	결정지가 (원/㎡)	정정지가 (원/㎡)	비 고
2018	고전면 명교리 403	대지	27,500	26,200	토지특성 오류정정

4. 행정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관리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055-880-2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년 5 월 31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9 - 662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2차) 용자계획 공고

2019년도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2차) 용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5.

하 동 군 수 - 다 음 -

- 1. 용자규모 : 업체당 7억원 이내
- 2. 대출금리 : 시중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3.5%
 - 협약은행 :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 경남은행 하동지점
- 3. 대출기간 : 7년(3년거치 4년균분상환)
- 4. 용자금의 한도액(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단위 : 백만원)

업체구분 용도	상시종업원수5인미만 또는 자본금1억미만	상시종업원수5인이상 또는 자본금1억원이상	상시종업원수10인이상 또는 자본금2억이상	상시종업원수20인이상 또는 자본금3억원이상
경영안정자금	100	200	300	500
기술개발자금	50	100	200	300
시설현대화자금	100	300	500	700

※

상시 종업원수 또는 자본금 규모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될 경우에는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적용

※ 자본금의 규모 증빙서류

- 법인등록 업체 : 재무제표상의 자본금 기준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매출액 기준

5. 지원대상

- 사업장이 공고일 현재 우리군 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우리 군의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한 업체
- 기타 용자대상 제외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6. 용자대상 제외업체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우리군 지방세 체납업체
- 종전 용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업체규모별 용자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 한국은행이 여신금지업종으로 분류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기타 용자금의 목적에 비추어 용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

7. 신청기간

- `19년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 ※ 수시 신청, 접수 후 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용자대상자 결정 및 지원함

8. 대출기한 : 용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간주함

9. 지원업체 결정방법 :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용자심의위원회 심의 후 용자 대상 업체를 선정

10. 제출서류

- 용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공장신축, 증개축의 경우)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 건축계약서 사본 1부.
-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

(기계설비 구매의 경우)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11. 접수 및 문의처 : 하동군 경제전략과 기업지원부서(055-880-2203)

12. 자금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자금사용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대출(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투자사업 완료통보서를 사업 전·후 사진 1부, 세금계산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군에 제출하여 함.
- 용자를 받은 3개월 이후 용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자금의 타 용도 사용 적발 시는 이차 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 지급된 금액은 정산·환수 함.
- 용자후 휴·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용자금이 회수됨.

13. 기 타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부) 및 수수료는 업체 부담임.
-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용자이므로 협약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담보제공 등)

< 작 성 요 령 >

(1) 설 립 일 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일 기재

(2) 생년월일

- 법 인 : 대표이사의 생년월일
- 개 인 : 대표자의 생년월일

(3) 주사업소(본점) 주소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의 주소 기재

(4) 사업장 주소 : 공장 소재지의 주소 기재

(5) 상시종업원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최근 3개월간 인원을
평균으로 계산 기입(일용제외)

(6) 매 출 액 : 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상 매출액 기재

(7) 공장등록여부

- 등 록 : 공장등록증이 발행된 업체인 경우 √ 등록

(8) 제조시설면적 : 건축물관리대장의 층별, 건물별 공장(제조) 면적을 합한
면적

(9) 임차면적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면적 기재

(10) 임차기간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기간 기재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업기간 :

사업개요

-
-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

소요자금 조달방법

- 자기자본
- 용 자
- 사 채
- 기 타

융자금 상환계획

기 타

(뒷면)

< 작 성 요 령 >

(1) 설 립 일 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일 기재

(2) 생년월일

- 법 인 : 대표이사의 생년월일
- 개 인 : 대표자의 생년월일

(3) 주사업소(본점) 주소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의 주소 기재

(4) 사업장 주소 : 공장 소재지의 주소 기재

(5) 상시종업원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최근 3개월간 인원을
평균으로 계산 기입(일용제외)

(6) 매 출 액 : 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상 매출액 기재

(7) 공장등록여부

- 등 록 : 공장등록증이 발행된 업체인 경우 √ 등록

(8) 제조시설면적 : 건축물관리대장의 층별, 건물별 공장(제조) 면적을 합한
면적

(9) 임차면적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면적 기재

(10) 임차기간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기간 기재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뒷면)

< 작 성 요 령 >

(1) 설 립 일 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일 기재

(2) 생년월일

- 법 인 : 대표이사의 생년월일
- 개 인 : 대표자의 생년월일

(3) 주사업소(본점) 주소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의 주소 기재

(4) 사업장 주소 : 공장 소재지의 주소 기재

(5) 상시종업원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최근 3개월간 인원을
평균으로 계산 기입(일용제외)

(6) 매 출 액 : 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상 매출액 기재

(7) 공장등록여부

- 등 록 : 공장등록증이 발행된 업체인 경우 √ 등록

(8) 제조시설면적 : 건축물관리대장의 층별, 건물별 공장(제조) 면적을 합한
면적

(9) 임차면적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면적 기재

(10) 임차기간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기간 기재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시설설비투자계획서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소요자금	용자신청	기타자금 (자부담 등)
소 계			
건 축			
기계설비			

2. 신규 시설계획

□ 건 축

건 축 의 종 류	신축() 증축() 개축()		
건 축 물 의 용 도			
위 치			
건 축 면 적 (m ²)		연 면 적 (m ²)	
건축허가(신고)일		준 공 예 정 일	
시 공 업 체		계 약 일	
소 요 자 금	백만원	용 자 신 청 금 액	백만원
구 비 서 류	1.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		

□ 기계설비

(단위 : 백만원)

연번	품 명	규 격 (모델명)	수량	단가	소요금액	구입처
	계					

- ※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중소기업 시설현대화자금 완료통보서

1.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FAX)	

2. 용자승인사항 : 경제전략과 - 호(2019. . .)

3. 시설설비 현황

가. 건 축

건 축 의 종 류	신축() 증축() 개축()	건 축 물 의 용 도	
위 치			
건 축 면 적 (m ²)		연 면 적 (m ²)	
건 축 허 가(신 고) 일		준 공 일	
시 공 업 체		건 축 기 간	
소 요 자 금	백만원	용 자 금 액	백만원

나. 기계설비

연번	품 명	규격(모델명)	수량	단가	소요금액	구입처
	계					

4. 용자(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대출은행	대출금액		
은 행	계	건축자금	기계설비자금
지 점			

5.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 붙 임 : 1. 사업추진사진(사업 전·후 각 1부)
2. 시설설비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현대화자금 완료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하동군수 귀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취급통보서

하동군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설비 구축을 위하여 지원한 육성자금에 대한 대출취급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자금지원내용

용 자 대 상 자					
자 금 의 종 류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input type="checkbox"/> 일반중소기업 시설현대화 자금 <input type="checkbox"/> 기술개발 자금				
자금용자승인일		발 급 (승 인) 번 호			
대 출 금	약정액	대 출 액			
		계	1차(.)	2차(.)	3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대 출 금 리	계	군 이차보전		업체부담	
	%	%		%	
대 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급점 및 담당자	(㉸)				

2019년 월 일

은행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665호

제4회 지방일반임기제(수목보호전문가 7급상당) 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하동군 공고 제2019-550호(2019.5.9.) 및 제2019-610호(2019.5.22.)에 의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서류전형 합격자

임용예정 부서	분 야	채용등급	선발예정 인원	서류전형 합격자
산림녹지과	수목보호 전문가	지방녹지주사보 일반임기제 (7급 상당)	1	2019-4-1 배○호

2. 면접 일정 및 장소

채용분야	면접 시험				비고
	일 자	등록시간	면접시간	장 소	
일반임기제(7급상당)	2019. 6. 11.(화)	14:30	15:00 ~ 16:00	하동군청 상설회의장	(본관 2층)

※ 면접시간은 유동적임.

3. 면접 방법 : 개별 면접

4.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19. 6. 13.(목) 예정
- 발표공고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hadong.go.kr>)

5. 응시자 주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 대상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등록시간까지 등록장소에 도착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채용분야의 면접시간 종료시까지 도착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됩니다.
-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면접일자 3일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사항은 하동군 행정과(☎055-880-2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면접장소 위치

- 등록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본관 2층)
- 면접시험장 : 하동군청 상설회의장(본관 2층)
- 주 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공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하동군보건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9. 6. 7.
하동군보건소장

1. 모집인원 및 업무내용

모집분야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인원	4명
근무지역	보건소 관내
업무내용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수행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노트북을 이용해 1:1 면접조사 및 계측조사(키, 몸무게, 혈압 측정) 수행)
조사기간	2019. 08. 16. ~ 2019. 10. 31.(2.5개월)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종료일은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조사시작 전 조사원 교육을 이수해야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 ※ 조사원 교육 일정 :
 - ▶ 필수: 전체집체교육(7.22 ~ 7.26 중 2일, 교육장소: 진주)
 - ▶ 필수: 1차 추가교육(7.29 ~ 8.2 중 1일, 교육장소: 해당보건소)
 - ▶ 평가점수 미달 시: 2차 추가교육 (8.6, 교육장소: 진주)
 - ▶ 온라인교육 (7.22 ~ 8.6 기간 내에 교육이수)
- 본 조사시작 전 사전 조사 (8.12 ~ 8.15) 필수

2. 모집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모집 자격요건

- 연령 : 30세 이상 성인
-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자(※ 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자)
 ※ 질병관리본부 조사시스템 접속 시 개인식별이 필요하므로, 인증서 필히 지참
- 심신이 건강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자
- 근무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가 가능한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모집 우대요건

- 업무 경력자 우대(※ 기 참여 조사원 중 자체 사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
- 조사지역 거주자이며, 지역실정에 밝은 자

3.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 책임감 및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4. 제출서류

필수제출	응시원서 1부(붙임2 신청서,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 지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개인정보동의 이용서 1부(붙임3 동의서, 반드시 서명 후 제출) ※ 채용을 위한 본인식별, 조사원 상해보험 가입 및 조사수행 지원활동 목적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이중취업 확인
선택제출	전산관련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자격증사본, 건강보험증사본 등) 반드시 제출
 - ※ 서류 미비자는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전산자격증은 자격증명서 및 사본을 제출해야 인정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 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6. 7(금) ~ 6. 21(금)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 및 문의 : 해당 보건소 및 경상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문의처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하동군 보건소 담당자	박남옥	(우52333)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055-880-6622
경상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서민정	(우: 52727)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16번길 15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관 5층 534호 예방의학교실	055-752-2042

6. 심사일정

- 서류합격자 발표 : 서류 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 (개별 통보)
- 면접일시 : 2019. 06. 27. 10:00 ~ 12:00
- 면접장소 : 하동군보건소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 후 1주일 이내 (개별 통보)
 -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채용을 해지 하며 보수 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
- 부정행위(조사지침 미준수)로 폐기된 조사자료에 대한 조사수당 미지급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활동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가. 수집·이용 목적 :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채용을 위한 본인식별, 조사원 상해보험 가입 및 조사수행 지원 활동

나. 수집개인정보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상해보험 가입 시 필요)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조사원 선정 시 및 조사수행 기간 동안 사용되며, 신청서 제출일 부터 1년 보관함

나. 신청서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일 부터 1년 보관함

3.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가. 조사원 지원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나. 다만,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조사원으로 채용이 불가함

4. 개인정보의 위탁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수행 및 지원기관인 질병관리본부, 총괄대학(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경상대학교, LG U+ , 전화점검 수행기관에서 사용함

2019. . .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지원자 : (인)

하동군 공고 제2019 -692호

2020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 공고

2020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자격

- 2020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어업인후계자로 선정자(2020년 어업인후계자로 선정 예정자 포함)로서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20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 * 단 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졸업예정자)와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어 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 의무사항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편입된 날부터 영어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 내에서 의무종사 기간 동안 영어에 종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 및 소집에 응해야 함

3. 신청기간 : 2019. 6. 12. ~ 6. 30. (19일간)

4. 접수기관 :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5. 구비서류

-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1부.
- 영어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 다만, 평가시 접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어교육훈련증명서, 영어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6. 대상자 선발절차

- 신청자 중 편입대상 적격자만 추천(하동군수→남해사무소장)
- 시·군별 편입인원 배정(병무청→군수)
- 편입대상 우선순위 및 편입대상자 확정(군 수산조정위원회)
- 산업기능요원 어업인후계자 편입

7. 문 의 처 :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254-3753),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880-2444)

2019. 6. 11.

하 동 군 수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장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사진 (반명합판)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본적	
	우편번호:			
	최종학력		학교	
	년 월 일		년(졸업, 휴학, 중퇴, 야간대 재학)	
	수산계학력		학교	
년 월 일		년(졸업, 휴학, 중퇴, 야간대 재학) *칸추가가능		
정착 사업장소	사업장명		업체취업일(승선 예정일)	
	소재지		업무	
	주사업 업종		주사업 업종	
	경영규모		(전,답,기타) 전화번호	
가족사항 (본인제외)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자격취득경력	년 월 일	자격·면허명 및 등급(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	자격취득일(입상일)

장학금, 포상 관련	년 월 일	내용	실시기관명

영어교육 훈련 경력 (총교육일수:)	년 월 일	내용	실시기관명

영어경력	년 월 일	내용	증명자 확인

「병역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 첨부서류 : 1. 영어사업계획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 1부.

영어사업 계획서

1. 현 황

(단위:척,대,개,천원)

영 어 규 모	구 분	품 목	규 모	연간생산량	연간생산금액(조수입)		
	어 선 어 업						
	증·양식업						
	종 묘 생 산						
	수 산 가 공						
	내 수 면						
시 설 ·장 비	어탐기	로 란	레이다	통신장비	양망(승)기	나침의	해 도
	사료저장고	현미경	발전기	양수기	MP제조기	고압세척기	정화조
	보일러	산소공급기	수온자동조절기	저수탱크	자동채취기	건조기	해수교반기
	자동결속기	초재기	탈수기	호이스트	콤베어	플랑크톤네트	사료분쇄기

2. 사업계획

◦ 향후 영어 세부사업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영어 사업계획서는 어업특성에 따라 적절히 변경 작성 가능

▶ 2019년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7급상당) 공무원 ◀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

분 야	임용등급	최종 합격자 (응시번호)
수목보호전문가	지방일반임기제 (7급상당)	합격자 없음

【문 의 처】

경상남도 하동군 행정과 인사담당자
(☎ 055-880-2153)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9 - 36호

20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 공고

20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자격

-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자로서, 징병 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 검사 대상자 중 2020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 의무사항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편입된 날부터 영농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 내에서 의무복무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work.mma.go.kr)을 이용하여 주1회 주간 근무일지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3. 신청기간 : 2019. 6. 14. ~ 6. 24. (11일간)

4. 접수기관 :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1)

5.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다만, 평가시 접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6. 문 의 처 :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55-880-2429)

7. 기타사항 : 병무청의 인원배정 결과('19.11~12월)에 따라 편입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신청하고, 후계농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야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가능함. (단, 기존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20년도에 후계농을 신청할 필요 없음)

2019. 6. 14.

하 동 군 수

< 별표 1 >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구분 품목	0.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 하는 농가	1.0~1.5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5~2.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2.0ha이상에 준하는 농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식량작물	0.79	0.79 ~ 1.58	1.58 ~ 2.37	2.37 ~ 3.16	3.16
노지채소	0.32	0.32 ~ 0.63	0.54 ~ 0.95	0.95 ~ 1.27	1.27
시설엽근채	0.13	0.13 ~ 0.26	0.26 ~ 0.40	0.40 ~ 0.53	0.53
시설과채	0.07	0.07 ~ 0.15	0.15 ~ 0.22	0.22 ~ 0.29	0.29
노지과수	0.22	0.22 ~ 0.44	0.44 ~ 0.66	0.66 ~ 0.88	0.88
시설과수	0.07	0.07 ~ 0.14	0.14 ~ 0.20	0.20 ~ 0.27	0.27
화 훼	0.05	0.05 ~ 0.11	0.11 ~ 0.16	0.16 ~ 0.21	0.21
약용작물	0.25	0.25 ~ 0.49	0.49 ~ 0.74	0.74 ~ 0.98	0.98
특용작물	0.49	0.49 ~ 0.99	0.99 ~ 1.48	1.48 ~ 1.98	1.98
느타리버섯	0.03	0.03 ~ 0.06	0.06 ~ 0.10	0.10 ~ 0.13	0.13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이상
한우(번식)	7	7 ~ 14	14 ~ 21	21 ~ 28	28
한우(비육)	4	4 ~ 7	7 ~ 11	11 ~ 14	14
낙 농	2	2 ~ 4	4 ~ 6	6 ~ 8	8
양돈(번식)	26	26 ~ 52	52 ~ 78	78 ~ 104	104
양돈(비육)	69	69 ~ 138	138 ~ 207	207 ~ 276	276
양계(산란)	1,263	1,263 ~ 2,525	2,525 ~ 3,788	3,788 ~ 5,050	5,050
양계(육계)	1,639	1,639 ~ 3,278	3,278 ~ 4,917	4,917 ~ 6,556	6,556

※ 영농기반은 신청당시 기준으로 평가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표준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 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의 기반은 50%인정

※ 계산예 : 수도작 신청자(남)가 논 0.9ha, 식량작물 0.28ha, 한육우 3두, 특용작물 0.8ha일 경우
우 1.77ha(논 0.9+ 식량작물 0.28+ 한육우 0.19+ 특용작물 0.40) = 80점

- 한육우 : 3두:4(해당구간 최고두수)×0.5ha(해당구간 표준기준 최고규모)÷2(50%)=0.19ha

< 별표 2 >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1. 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농업계 대학을 졸업한 자
- 통합 농공고의 경우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 일반대학의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 농업계 대학과 일반대학을 졸업한 자(두 가지 대학의 학력소지자)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일반대학의 농업계열학과 포함) 4년제 대학에 진학하여 2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일반대학의 농업계열학과 포함)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1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2. 비전공으로 보는 경우(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비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등

※ 참 고

- 전문대학 구분 없는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함
- 이수라 함은 당해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 학년의 필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함

◦ 영농창업특성화대학 : 연암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 미래농업선도고교 : 충북생명산업고, 호남원예고, 홍천농고

< 별지 제1호 서식 >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접 수 번 호		사 진 (반명합판)
신 청 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본 적				전 화 번 호	(지역번호 :)	
	현 주 소	(우편번호 :)				-	
	최종학력	학교 과 (졸업, 중퇴, 재학)			졸업년월일		
	농 업 계 학 력	학교 과(졸업, 중퇴)			졸업(중퇴) 년월일		
정 착 사업장소	사 업 장 주 소	(우편번호 :)			전 화 번 호	(지역번호 :)	
	주 사 업 작 목		부사업 작 목		경영규모	전 : 답 :	기타:
가족사항 (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장 학 금, 포상경력 영농기술 자격취득 경 력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영농교육 훈련경력 (총교육 일수:일)	기간(연월일)	내 용				실시기관명	
영농경력	기간(연월일)	내 용				증명자확인	

병역법 제38조 제4호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영농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업계학력은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를 우선 기록할 것

< 별지 제2호 서식 >

(앞 쪽)

영농 사업계획서

1. 현 황

구 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영농 규모 (m ²)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m ²)	창 고 축 사 온 실 비 닐 하우스				벼	벼			기 타
					첫	배			
농기 자재 (대,척)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배 현황 (m ²)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축보 유현황 (두,수)	한 우	젓 소	돼 지	닭					기 타
기타 특기 사항									

(뒷 쪽)

2. 사업계획(주작목에 대해서만 기입)

- 향후 영농 세부사업계획

(단위 : m², 마리, 만원)

작 목 명	현 재			편입후 계획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 도 작						
화 획						
한 우						
돼 지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농지구입						
한우입식						
.						
.						

세부사업명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농지구입						
한우입식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기 타

* 영농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변경작성 가능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715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8급상당) 채용시험계획 공고

하동군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14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하동야생차 박물관 관리	일반임기제 8급 상당	1명	2년	농업소득과 농업유산담당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하동야생차 박물관 관리	- 박물관 운영 및 관리 - 박물관 전시·행사 기획 및 운영 -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소장유물 보관 관리 및 DB구축

3.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 직급	자 격 기 준
하동야생차 박물관 관리	(일반임기제 8급상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근거 한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5. 보수 수준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한
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
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임기제 8급	52,760	37,635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
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19. 6. 14(금)	'19. 6. 14 ~ '19. 6. 24	서류전형	-	'19. 6. 26.
		면접시험	'19. 6. 28.	'19. 7. 1.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19. 06. 14 ~ 06. 24/ 10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및 국·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계(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수수료(8급 5,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 봉투 (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8급 상당 - 5,000원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농업소득과(☎ 055-880-2832)

하동군 공고 제2019-733호

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안)

「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하 동 군 수

1. 개정이유

적극행정면책의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19. 5. 14.자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주요내용

-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으로 변경(제5조)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현장면책 결정(제10조의2 신설)

-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 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
-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 될 때에는 현장에서 면책 결정

4. 예고기간 및 공고방법

- 예고기간 : 2019. 6. 20. ~ 2019. 7. 9. (20일간)
- 공고방법 : 하동군보,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5. 의견제출

- 「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7. 9.(화)까지 하동군 기획예산담당관(청렴감사담당)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간 : 2019. 6. 20. ~ 2019. 7. 9. (20일간)

라.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마. 제출하는 곳

- 소 속 : 하동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청렴감사담당
- 주 소 : (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연락처 : (전화) 055-880-2033, (이메일) dove1564@korea.kr
- 팩 스 : 055-880-2019

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현장면책 결정) ①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현장에서 감사자를 거쳐 감사부서 책임자에게 면책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 면책요청이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

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에서 면책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감사 대상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면책심사 신청 안내

하동군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본인
 -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 종료 이후 : 감사결과 처분 지시 이전까지(별지 제2호서식)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현장면책 검토 요청 안내

감사대상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 「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판단 될 경우 현장면책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요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2. 요청기간

- 감사 종료일 10시 전까지(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타		

「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중

[별지 제2호의 2서식]

현장 적극행정면책 검토 신청서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감사 지적사항	
면책 심사 신청 사유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 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업무 책임자 의견	

※ 고의 또는 중과실 배제 추정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 심사조서

감 사 기 관 명		감 사 연 월 일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정 계 양 정 (안)			
비 위 내 용			
신 청 사 유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감 사 (부 서) 책 임 자 검 토 의 견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총 합 의 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p><신 설></p>	<p>제5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p>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p>제10조의2(현장면책 결정) ① 감사</p>

대상기관은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현장에서 감사자를 거쳐 감사부서 책임자에게 면책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 면책요청이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에서 면책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감사대상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9-746호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9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하 동 군 수

1. 제 목 :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9. 6. 21. ~ 7. 6.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참조
5. 공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교부 및 기타문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 055-880-2564)

시군구	출력 종류	년 도	기 분	차량번호	사용본거지	기존채납 총금액	반송사유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8*무647*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길 *0	234,24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8*무6465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길 *0	100,78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7*라*576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5번지	100,78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7*바974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10	1,043,27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7*바973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10	1,052,72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8*가*61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5-47	71,98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8*가15*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5-47	71,98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6두*6*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68-0	32,71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7*라*642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9-85	741,23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8*284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미산길 *0	71,98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73허*70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길*	87,96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1소***3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새동네길*0-7	67,75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5고*556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새동네길*0-7	48,40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2버*435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번지 2호 2층	95,530	반송함투여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1더*16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554	268,04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7나*65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554-0	669,74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21나*76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8-23	132,14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4*가6249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번지 10호	280,20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7*라259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0-0	534,00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버*80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0번지 1호	287,99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4*나285*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왕골길*0-0	100,78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6부*09*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167	380,25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8*8045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167	982,18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7*2354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0	96,82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4서*12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장2길*5-7, , 3층	64,15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7머*83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	46,97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7*라*062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덕길 *-12	234,24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부산8*3959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0	36,93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루*45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6-3	673,26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66수*96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2길*	351,04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7나*31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상신대길*3-6	12,100	주소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0누**15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상신대길*3-6	11,960	주소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7거*68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상신대길*3-6	17,530	주소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70너*14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소전방길*6	100,78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1*마**35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황금길 *	19,360	주소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8저*5*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76	100,78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65너*2*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 , 3층	48,40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6주*242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원양샘골*81-5	60,26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07버*195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문화1길*5	58,90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07어*51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2348-3	400,95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3*조*1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6-15	103,30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56루*012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평돌담*28	76,440	수취인부재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69보*36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금남길 *9	38,72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64소**4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장1길*3	19,36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7나*5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장1길*3	18,14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11나*81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상평1길*6, , 30*호 (동 원사인빌)	42,78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3*주*47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길*5-16	8,25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31너*126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143	262,25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47거*1*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내촌길 *	133,80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8*누816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새터*21	25,42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8*나19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579	25,42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5거*33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579	62,51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0부*51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대축길 *-24	49,04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10수*67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2280-*	24,20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전남8*가2593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재첩길 *, , 10*호	150,71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2러*1*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촌길 *2-7	48,40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버*259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청년회관*14-6	38,72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8*구2743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수척길 *	327,28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8*루8839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재첩길 *, , 상가호	268,03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4서*898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9-6	198,16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72나*514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9-6	511,57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03조**58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상촌길 *8-15	67,76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47저*874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지소1길*0	155,97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8*무299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31-0	1,132,28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8*361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54-0, ,	798,05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8*루3*3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상신*89-52	75,60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35소*71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소재2길*4-13	57,580	이사감
하동	독촉분	19	1	90누*44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이사감

군청					신흥길 *9-1	100,250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7두*92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상동산길*	116,65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5보*29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경제산업*246-9	175,50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37무*40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37-1	54,46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1머*62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37-1	133,79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54소*61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대전방길*0	43,02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4*나2039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소재1길*1, , 나동 50* 호 (흥한로알맨션)	24,20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7너*535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나팔중앙*27-8	94,69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76루*64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99	19,99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7*130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6번지	1,803,52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70보*36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동교2길*	33,88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7오*54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막곡*6, , 1층	29,44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0어**51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6, , 2층	311,65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13부*36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조간너리*15	11,460	수취인부재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8*두3126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조간너리*15	83,130	수취인부재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총남8*가92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 , 2층	125,36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7소*75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금오산길*82-46	16,66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4로*14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금오산길*82-46	20,92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21우*280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구학길 *-71	76,44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9*자8315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구학길 *-71	133,80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7나*30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554-0, , 2층	606,68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바*1*3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931-0	382,34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7나*9*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931-0, , 2층	75,11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7나*94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931-0, , 2층	95,56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노*425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린길 *	200,44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7서*40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동산길 *	276,79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6거*849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하마길 *	113,72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수*724	경상남도 하동군 흥천면 경서대로*143	682,93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71부*07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49-25	132,52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소*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17-6, , 다동 2 호 (하남주택)	100,52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4구**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82, , 2층	146,39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65가*2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월진길 *-1	29,19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17머*48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서1길*1	13,05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8*무*76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43-5	716,27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7*310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주포중앙*29-1, , 자가용 사용신고필 (84-0090)	501,96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수*102	경상남도 하동군 흥천면 인동길 *3	75,61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7오*24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6	118,73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부산8*987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궁단로 *19	196,43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6버*4*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16***	70,36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7*8689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10***	1,006,43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03루*65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	14,62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7거*65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	28,44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5머*479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덕기길 ***	75,61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66라*52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노화길 ***	144,84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3서*40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서1길***	67,76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7더*35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동 202호 (해 양파크빌아파트)	52,29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부산8*모73*3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덕길 ***	179,21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7나**7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41,36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05노**9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	95,55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8*무330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 5/4	738,32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5*698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871,95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6거*859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소재1길***02호 (무지개 맨션)	100,77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7조*03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소재1길***02호 (무지개 맨션)	79,95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0서**78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인동길 ***	18,14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7거**67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동 201호 (해 양파크빌아파트)	30,48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우*04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	145,58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7*너3976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하평길 ***	489,07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17거*737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하평길 ***	275,30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8*구8*8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곤북로 ***	25,42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7머*829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돌고지로***	32,71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4서*276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중앙***	148,26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8*무17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	417,34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2오*59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한재길 ***	53,96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6무*792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59,04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57노*42*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	48,39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6우*247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	237,33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64머*866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	169,51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1가*484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매자신방***	25,42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7거*90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영천안길***	12,19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4저*536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영천안길***	38,54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47버*833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새동네길***	23,93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7나*86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	469,96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7버*25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	511,30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11나*12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길목길 ***	113,07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7더*57*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	436,23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57우*717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서제길 ***	299,31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8*거167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항도길 ***	201,04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04라*266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흥길 ***	71,98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경남8*루595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	937,97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버*65*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	23,50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1가*493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	33,88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2저*224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작은삼내***	170,36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7가*65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세종태실***, 통영농조합 법인	302,470	수취인불명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87루*01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서근속등***	251,50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10가*94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2	141,48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3나*07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 50-1	100,38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96도*269	경상남도*하동군*진교면* 민다리길*62-4	22,530	이사감
하동 군청	독촉분	19	1	58두*046	경상남도*하동군*청암면* 청학동길*43-10	13,610	이사감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756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8급상당)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하동군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25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하동야생차 박물관 관리	일반임기제 8급 상당	1명	2년	농업소득과 농업유산담당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하동야생차 박물관 관리	- 박물관 운영 및 관리 - 박물관 전시·행사 기획 및 운영 -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소장유물 보관 관리 및 DB구축

3.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 직급	자 격 기 준
하동야생차 박물관 관리	(일반임기제 8급상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근거 한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5. 보수 수준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한
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
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임기제 8급	52,760	37,635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
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19. 6. 25(화)	'19. 6. 25 ~ '19. 7. 5	서류전형	-	'19. 7. 8.
		면접시험	'19. 7. 10.	'19. 7. 12.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19. 06. 25 ~ 07. 05/ 10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및 국·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계(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수수료(8급 5,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 봉투 (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8급 상당 - 5,000원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농업소득과(☎ 055-880-2832)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직급	비 고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8.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하동군수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		하동군 수입증지 6,7급(7,000원) 8,9급(5,000원)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지방일반임기제 임용시험)		
응시직급	지방녹지주사보 (일반임기제)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		
2019년 월 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하동군 행정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응시원서는 향후 기능시험 및 면접시험에 사용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
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붙임 3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 시 활용됨

< 붙임 5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문

하동군은 지방임기제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정보>

- 사진 및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이메일,휴대폰번호,병역사항 등)
- 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선택정보>

- 자기소개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 ※ 상기 선택정보를 미작성하더라도 응시는 가능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류전형·면접시험 시 직무수행 적합성 등의 판단을 위해 활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 기간 전·후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해당란에 체크 ✓ 표시

2019. . .

작성자 성명 : (서명)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757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7급상당)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하동군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25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수목보호전문가	지방일반임기제 7급상당(지방녹지주사보)	1명	2년	산림녹지과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수목보호 전문가	- 10리 벚꽃길 보호사업 총괄 - 관내 가로수 수목 등 산림보호 관련 업무 수행

3.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자격요건(필수)
수목보호 전문가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조경학, 산림자원학, 산림환경자원학
	우 대 조 건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 력이 있는 사람 2.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훈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직무분야 : 식물보호, 조경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1항 4호)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수목 보호 (3년이상경력)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5. 보수 수준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7급(상당)	60,139천원	42,713천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19. 6. 25(화)	'19. 6. 25 ~ '19. 7. 5	서류전형	-	'19. 7. 8.
		면접시험	'19. 7. 11.	'19. 7. 12.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19. 06. 25 ~ 07. 05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계(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 등기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7급 7,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 (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7급 상당 - 7,000원
-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산림녹지과(☎ 055-880-2493)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직급	비 고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8.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하동군수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하동군 수입증지 6,7급(7,000원) 8,9급(5,000원)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지방일반임기제 임용시험)		
응시직급	지방녹지주사보 (일반임기제)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	
2019년 월 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하동군 행정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응시원서는 향후 기능시험 및 면접시험에 사용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
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붙임 3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 시 활용됨

하동군 공고 제2019 - 759호

하동군 도로명 변경 공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하동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하 동 군 수

1. 공 고 일 : 2019. 6. 25.
2.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

현재 도로명	예비 도로명(변경내용)	심의결과
외골길	멧골길	원안가결

4. 도로명 변경 절차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가능하며,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 5년 동안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 공간정보담당부서(☎055-880-2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2019-760호

2019년도 하동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사업 공고

하동군에서는 2019년도 전기자동차(초소형)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6월 25일

하 동 군 수

1. 전기 자동차 구입 보조사업 개요

-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대수 : 초소형 2대
- 접수기간 : 2019. 6. 26.(수) ~ 예산소진시까지
-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고,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차량
 -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지원금액 : 672만원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단가는 [붙임1]과 같으며, 향후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 등록 차량

2.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지원대상 : 세대당 1대

- 하동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자격 최소연령) 이상 군민
- 하동군 관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하동군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제외)

※ 구매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신청자격(필수조건)

- ①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③ 하동군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하동군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소가 ‘하동군’이어야 함

3. 보조금 구매신청 및 대상자선정

□ 구매 지원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2] 작성
- 신청서 접수는 반드시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만이 가능하며, 구매신청자의 개별 접수는 불가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는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구매지원신청서(스캔파일)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http://www.ev.or.kr/ps>)을 통해 신청

※ 첨부파일은 필요서류를 모두 스캔하여 PDF 파일 하나로 첨부, 첨부파일 사이즈는 5MB를 넘지 않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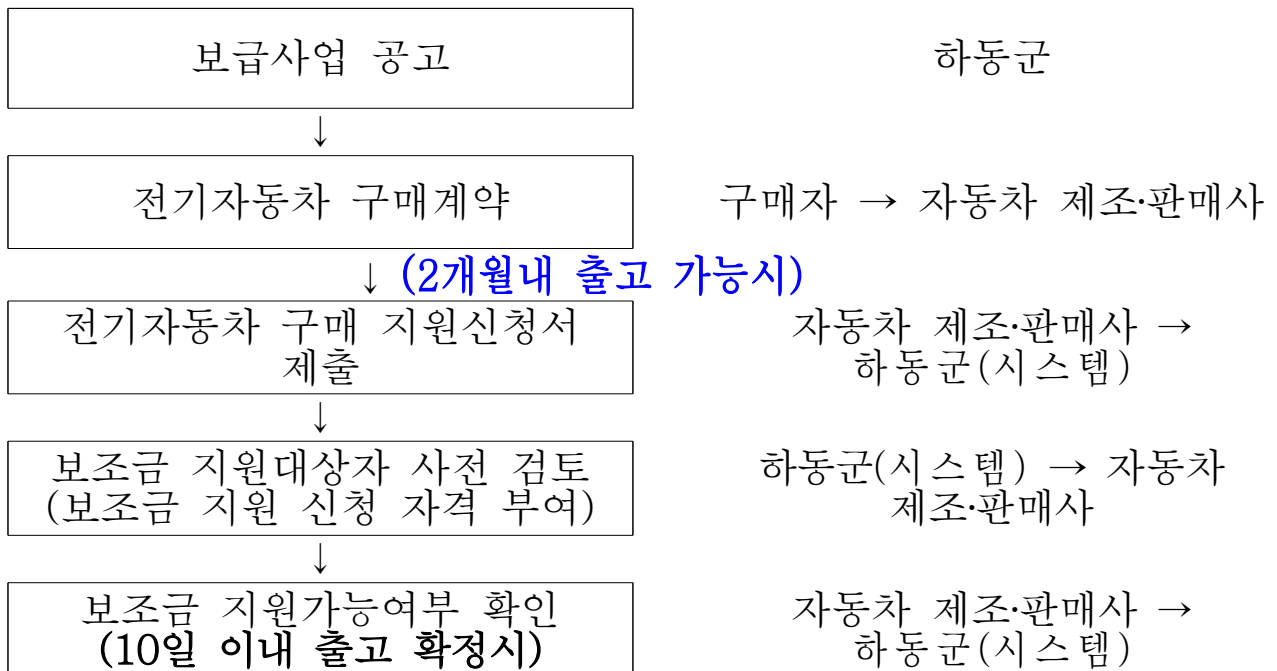
□ 신청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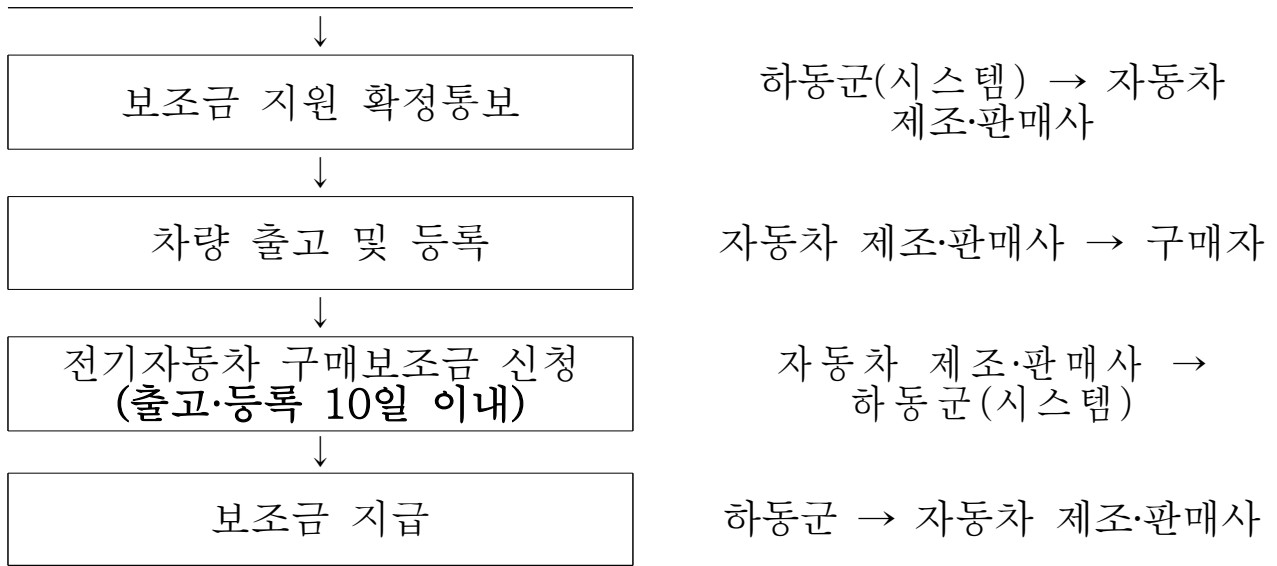
- ① 개 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동일 세대원 공동명의 등록 시),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붙임2], 차량 구매계약서, 유의사항 동의서[붙임3]
 - ②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차량 구매계약서,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붙임2], 유의사항 동의서[붙임3]
- ※ 신청서류 원본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시 제출

□ 보조금 지원확정자 선정방법

- 구매지원신청서(자격요건 확인용)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전기자동차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출고예정서[붙임4] 제출 순으로(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이상이 없을 경우) 대상자 확정
-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국·공휴일 제외)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출고 및 등록 완료) 미제출 시 구매지원신청 자격 및 보조금 대상자 확정이 취소되므로 출고예정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급절차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http://www.ev.or.kr/ps>)

4. 특이사항

- 신청서류를 접수한 이후 차종, 연식 변경 불가
- 하동군에 구매신청서를 접수하고 2개월 이내에 ‘출고예정서’를 미제출할 경우와 출고예정서 제출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미제출 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가능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정자 선정
- ※ 출고·등록순이므로 예산소진 등의 이유로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면 신청 취소처리 됨
-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 예정이며, 구체적인 절차 및 지원 내용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 ☎1661-0970)에서 별도 확인 가능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폐배터리 반납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 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 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 만	12개월 이 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 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 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 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5.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 관련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전기차 보급관련 민원 종합상담	1661-0970
경상남도 (기후대기과)	경상남도내 전기차 보급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 축	055-211-666 4
하동군 (환경보호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055-880-256 4

- 붙 임 1.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서
 3. 유의사항 동의서
 4. 전기자동차 출고 예정서
 5.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서

[붙임 1]

20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제조·판매사	차종	주행거리(km)		배터리용량(kwh)	보조금 지원금액(만원)
			상온(20~30℃)	저온(-7℃)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0.8	64	6.77	672
	대창모터스	DANIGO	60.8	74.4	7.25	672
	쎬미시스코	D2	92.6	113.9	17.28	672

※ 차량별 성능, 판매가격, 할인 유무 등 기타 세부사항은 구매자가 대리점과 협의

[붙임 3]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에는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하동군수 귀하

